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2360-01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7. 4

연구기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연구주관기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 임상혁(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참여자 : 이경숙(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임 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이윤근(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간우(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진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1.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3
1)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3
2) 농가 소득의 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6
2. 농업 보호의 필요성	8
3. 농촌의 사회보장 실태	9
4. 농업재해현황	12
5. 연구 목적	18
II. 연구 방법	20
1. 문헌 조사 및 해외 벤치마킹	20
2. 농업인 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국내 관련 자료의 분석	20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20
4. 설문 조사	20
III. 연구 결과	21
1. 농업인 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21
1)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식	21
(1) 적용 범위에 대한 고려	21
(2) 비용 부담 방식과 강제 적용 여부	22
(3) 급여기초소득의 결정	23
(4) 요율결정방식	23

(5) 가입시 건강진단	23
(6) 급여 내용, 수준 및 운영 기관	23
(7) 이 안에 대한 평가	24
2) 신규 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도입 방안	25
(1) 보험 적용 대상	25
(2) 보험료 부담 방식과 강제 적용 여부	25
(3) 급여기초소득의 결정	26
(4) 보험 급여의 수준	27
(5) 보험요율 산출	27
(6) 재해보험기금 조성	27
(7) 재해보험의 운영기관	27
(8) 이 안에 대한 평가	28
2. 선진국의 농업인 재해 보상 체계 검토	28
1) 외국 산재보험의 농업인 적용범위(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28
(1) 일본	30
(2) 독일	33
(3) 기타 국가의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여부	35
2) 농업인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38
(1) 공적기관 단독 운영	38
(2) 경쟁적인 사적기관에서 운영	39
(3) 공·사 혼합관리운영체계	39
3) 산재보험의 적용	39
(1) 산재보험 적용의 대기기간	39
(2) 적용범위	40
(3) 보상대상이 되는 부상과 질병	41
(4) 산재보험급여	42

(5) 산재보험 재정구조	48
3.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제도 모델 개발	51
1) 모델 개발의 원칙	51
(1)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도 도입	51
(2) 기존 산재보험 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를 신설함	54
(3)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성을 갖되, 기존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사회보험이 되도록 설계함	55
(4) 서비스 제공 체계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최소화함	56
2)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제도 모델	57
(1) 강제/임의 가입 여부, 가입/적용 대상	57
(2) 재정 운용 및 징수 방식	62
(3) 보상 결정 체계	66
(4) 요양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68
(5) 보험 급여의 범위 및 수준	68
(6) 보험 운영 방식	79
3) 연간 급여 지출 추계	80
(1) 요양 급여 지출 추계	80
(2) 요양 급여외 기타 급여 지출 추계	81
(3) 연간 급여 지출 추계 종합	83
4. 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88
1) 응답자의 특성	89
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	92
3) 응답자의 특성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3
4) 부담 가능한 보험료의 수준	96

5) 가입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이유	100
6) 정부 지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101
7) 농업인재재보험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101
8) 농업인재재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102
9) 수용도 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102
IV. 결론 및 제언	105
V. 참고 문헌	112
VI. 부록	115
1. 운영비 추계를 위한 제 조직규모	115
2. 수용도 조사 질문지	122
3. 수용도 조사 결과 기초데이터	125

〈표 차례〉

<표 1> 농가인구의 감소	4
<표 2> 경제활동인구 중 농가 비율	5
<표 3>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가구, %)	5
<표 4> 농가소득(단위: 천원, %)	7
<표 5>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 현황(2004년) <단위 : 천명>	10
<표 6> 농업인 연금수급자 및 미수급자 현황(2004년) <단위 : 천명>	10
<표 7> 전산업대비 농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명>	13
<표 8> 농업부분 사업장 및 재해자 수 변화추이<단위: 개소, 명>	13
<표 9> 농업인 안전공제 사고유형별 공제금 지급건수 (2005년)	14
<표 10> 농약 중독조사 결과	15
<표 11> 농작업 관련성이 높은 감염성질환의 연도별 발병 현황 (단위 : 명)	16
<표 12> 국내에 보고된 농업과 관련된 알레르기 원인	17
<표 13>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21
<표 14>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30
<표 15> 자영업자(농업인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방식	37
<표 1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52
<표 17> 농업인재해보상 방식의 방안 비교	53
<표 18>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켰을 경우의 문제점	55
<표 19> 산재보험 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6
<표 20> 2004년의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천명)	59
<표 21> 전·겸업별 농가 (단위 : 호)	60
<표 22> 농업재해보상보험 가입/적용 대상자수 추계 (단위 : 명)	60
<표 23> 성별 및 호당 농가 인구 (단위 : 가구-호, 인구-명)	61
<표 24> 건강보험 체계 내의 농어업인 현황(2006년 1월 현재) (단위 : 명)	61
<표 25> 2007년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65

<표 26> 2005년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66
<표 27> 요양비 청구절차	70
<표 28> 지급사유, 지급시기 및 내용	73
<표 29> 청구 및 지급방법	73
<표 30> 구비서류	73
<표 31> 간병 급여	75
<표 32>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77
<표 33>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78
<표 34> 산재보험의 보상 관련 고시(2007년 기준)	79
<표 35> 농재보험의 연간 요양급여비 추계 (단위 : 명, 원)	81
<표 36> 산재보험 급여별 지급액(2005년)	83
<표 37> 농재보험의 연간 기타 급여비 추계 (단위 : 원)	83
<표 38> 농재보험의 연간 급여비 추계(단위 : 원)	84
<표 39> 정부 보조에 따른 농업인 부담 보험료 변화	85
<표 40> 농재보험 운영 기관 행정 비용 추정	87
<표 41> 일부업무 위탁시 농재보험 운영 기관 행정 비용 추정	88
<표 4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이유	100
<표 43> 농업인재해보험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102
<표 44> 보험 급여 우선순위	102

〈그림 차례〉

<그림 1>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비율의 변화	6
<그림 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규모 비교	8
<그림 3> 농촌 노인 가구 단위 연금 가입 현황	11
<그림 4> 농촌 노인 가구단위 의료보험 가입현황	12
<그림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64
<그림 6> 응답자 성별 분포	89
<그림 7> 응답자 연령별 분포	90
<그림 8>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90
<그림 9> 응답자의 거주지 규모별 분포	91
<그림 10>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91
<그림 11> 응답자의 소득별 분포	92
<그림 1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	93
<그림 13> 응답자의 성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3
<그림 14> 응답자의 연령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4
<그림 15> 응답자의 거주지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5
<그림 16> 응답자의 학력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5
<그림 17> 응답자의 소득 수준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96
<그림 18> 병원비 전액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97
<그림 19> 병원비 전액+휴업급여3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98
<그림 20> 병원비 전액+휴업급여5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99
<그림 21> 병원비 전액+휴업급여7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100
<그림 22> 정부 지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10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농업은 국가경제의 1차 기반산업으로 국민생활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지만 자연조건과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생산의 특성상 인위적인 생산 조절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양승룡,2000; 송유철 등, 2001)

현재 우리 농업은 지속적인 농가소득의 감소,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대, 지속적인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교육·복지·의료에 있어서의 소외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의 FTA 협상 타결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200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 등 복지 및 지역균형개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004)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2005)등을 수립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우리나라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농가인구는 1996년 469만명에서 1999년 420만명, 2002년 359만명으로 1년에 약 10만명 이상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며 2006년 현재 약 3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

다.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11.46%에서 2003년 9.99%, 2006년 현재 8.74%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이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 및 이로 인한 소득 감소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경제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도·농간 소득격차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로 인해 농촌의 인구 이탈과 고령화는 가속화되었다.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 경영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세 이하의 젊은 농가의 수는 1996년 7%대에서 2001년 4%대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전체농가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수는 1996년 45.7%에서 2001년 55.4%, 2006년 약59%로 증가하였다. 이는 농촌사회에 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단절되었고 기존의 인구집단의 연령증가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농가인구의 감소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남자 농가인구(명)	여자 농가인구(명)
1996	1,479,602	4,692,040	2,262,744	2,429,296
1997	1,439,676	4,468,172	2,149,479	2,318,693
1998	1,413,017	4,399,643	2,128,697	2,270,946
1999	1,381,637	4,209,799	2,039,633	2,170,166
2000	1,383,468	4,031,065	1,970,989	2,060,076
2001	1,353,687	3,933,250	1,902,666	2,030,584
2002	1,280,462	3,590,523	1,747,802	1,842,721
2003	1,264,431	3,530,102	1,715,127	1,814,975
2004	1,240,406	3,414,551	1,653,883	1,760,668
2005	1,272,908	3,433,573	1,676,592	1,756,981
2006	1,245,083	3,304,173	1,607,214	1,696,959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표 2> 경제활동인구 중 농가 비율

	경제활동인구(천명)	농가		비농가	
		인구(천명)	비율(%)	인구(천명)	비율(%)
2000	22,134	2,537	11.46	19,597	88.54
2001	22,471	2,478	11.03	19,994	88.98
2002	22,921	2,422	10.57	20,499	89.43
2003	22,957	2,293	9.99	20,663	90.01
2004	23,417	2,152	9.19	21,265	90.81
2005	23,743	2,126	8.96	21,617	91.04
2006	23,978	2,097	8.74	21,881	9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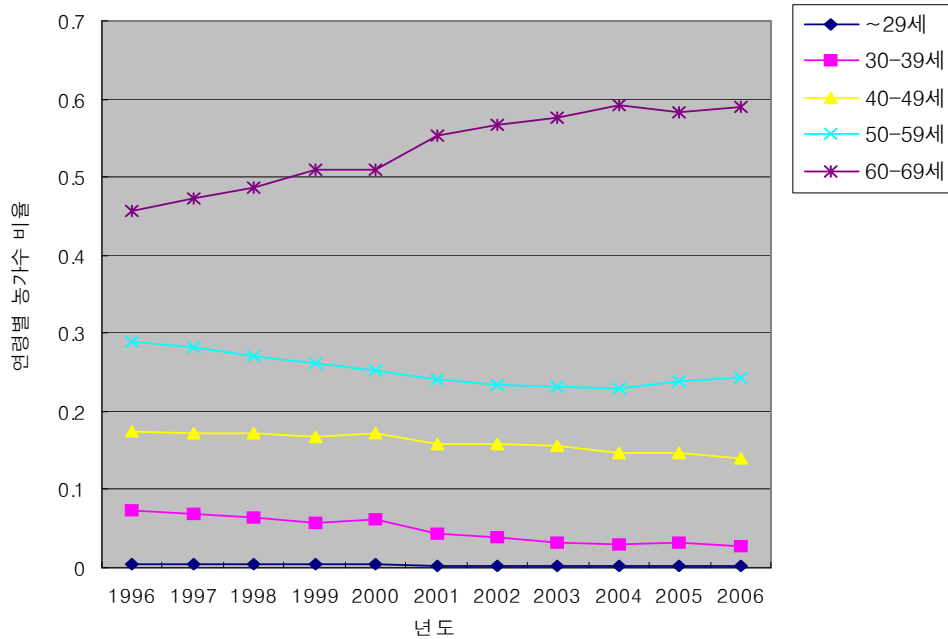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가구, %)

구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전체 농가수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1996	7,184	0.49	109,821	7.42	259,617	17.55	426,801	28.85	676,179	45.70	1,479,602
1997	6,736	0.47	100,107	6.95	248,299	17.25	404,813	28.12	679,723	47.21	1,439,676
1998	6,358	0.45	91,933	6.51	242,885	17.19	383,748	27.16	688,092	48.70	1,413,017
1999	6,533	0.47	78,097	5.65	229,973	16.64	362,562	26.24	704,472	50.99	1,381,637
2000	7,270	0.53	84,246	6.09	237,737	17.18	348,067	25.16	706,148	51.04	1,383,468
2001	3,505	0.26	59,179	4.37	215,362	15.91	326,004	24.08	749,637	55.38	1,353,687
2002	2,948	0.23	50,046	3.91	202,113	15.78	298,655	23.32	726,700	56.75	1,280,462
2003	2,358	0.19	41,733	3.30	197,820	15.64	292,797	23.16	729,723	57.71	1,264,431
2004	1,838	0.15	35,814	2.89	182,321	14.70	286,096	23.06	734,337	59.20	1,240,406
2005	2,382	0.19	40,010	3.14	185,849	14.60	302,852	23.79	741,815	58.28	1,272,908
2006	1,624	0.13	33,409	2.68	173,996	13.97	302,053	24.26	734,000	58.95	1,245,083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그림 1>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비율의 변화



2) 농가 소득의 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확대에 따라 농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졌으며 농가경영여건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표 4는 농가의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의 전체적인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가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7.13%에서 2005년 38.23%로 감소하였으며, 농가 소득의 증가분은 대부분 비경상소득으로 인한 증가분임을 알 수 있다. 황의식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FTA가 추진됨에 따라 관세를 완전 철폐하였을 때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하는 농가의 비율이 42.8%이고, 2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22.5%가 될 것이라고 한다.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할 비율이

75.6%에 이르고, 20% 이상 감소할 농가도 58.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농가의 소득 규모는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표 4> 농가소득(단위: 천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가소득*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경상소득	23,907	100.00	24,475	100.00	22,000	81.85	24,600	84.82	25,778	84.51
농업소득	11,267	47.13	11,274	46.06	10,572	39.33	12,050	41.55	11,815	38.73
농업외 소득	7,829	32.75	8,140	33.26	9,397	34.96	9,544	32.91	9,884	32.40
이전소득	4,811	20.12	5,060	20.67	2,031	7.56	3,006	10.37	4,078	13.37
비경상소득	-		-		4,878	18.15	4,401	15.18	4,725	1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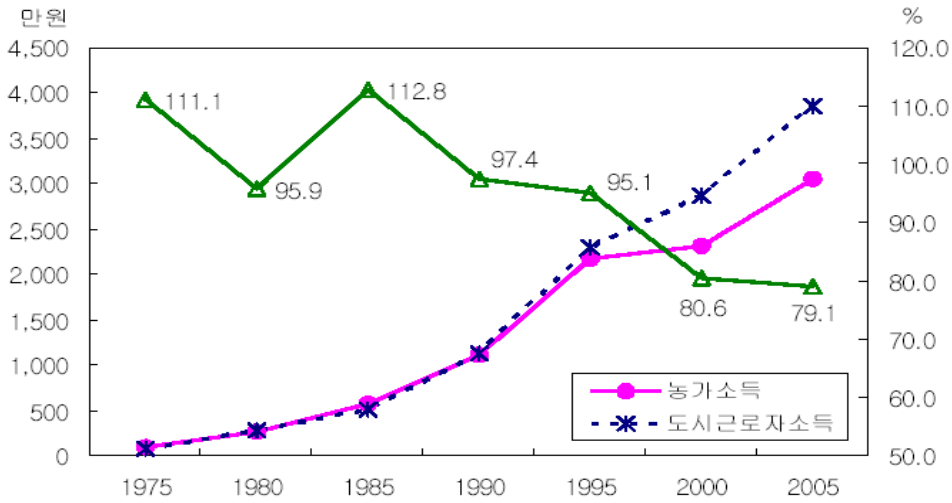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농업경제통계. 온라인간행물.

도·농간 소득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1995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두 집단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된다.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80% 정도에 그치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흥규(2003)에 따르면 빈곤률에 있어서도 도시빈곤율이 1999년 7.3%, 2000년 5.4%, 2001년 4.4% 인 것에 비해 농가빈곤율은 13.6%, 12.0%, 11.8%로 도시빈곤율의 1.9 ~ 2.7배에 이르고 있다. 김정호(2005)에 따르면 농가 간에도 저소득층과 고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 내부의 계층간 갈등을 가져오고 있고, 박대식 등(2006)에 따르면 소득 뿐 아니라 고용,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 전반적인 양극화가 농촌 사회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규모 비교



자료: 박시현 외(2006).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소

2. 농업 보호의 필요성

농업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이며 농촌의 주요소득원으로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은 자연 생태의 보전, 환경보호, 자연 공간 및 휴식 공간의 제공하는 등의 역할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까닭에 농업은 식량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또한 환경보전과 생태질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 되어야만 한다. 농업이 단순히 농업인의 생계 수단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박창규, 2004).

따라서 농촌이 생활공간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담당 할 수 있게 안정적인 소득의 보

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복지 기능의 강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만 현재 농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농촌의 사회보장 실태

2004년도 농업경영주 1,240천명 중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인 18~59세 인구는 506천명이다. 60세 이상 연금수급대상은 734천명인데, 이중 240천명은 현재 71세 이상으로 1995년 연금 가입 당시에 이미 60세 이상이어서 현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연금 가입대상 506천명 중 연금가입자는 355천명이고, 151천명은 기초생활 곤란, 병역의무,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이다. 연금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270천명으로 납부율은 약 76.1%이다. 연금 수급대상자 734천명 중 71세 이상자를 제외한 494천명의 수급대상자 중에서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438천명으로 약 88%이다.

그러나 60세 이상이지만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와 수급대상이나 미수급 받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면 전체 농가경영주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었거나 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69.3%이다. 이는 전체 농가의 30.7%는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65세 이상 농촌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의 미가입률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연금 수혜 비율은 20.2%에 불과했다(박대식과 최경환, 2006).

박찬임(2002)의 연구에 따르면 농민을 대상으로 60세 미만의 농민에게는 국민연금의 가입여부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인 60세 이상의 농민에게는 국민연금수

급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연금이 가입이 강제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77%에 지나지 않았으며, 60세 이상 농민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률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대식과 최경환(2006)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7.9%로 이중 본인명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31.4%, 자녀 명의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36.5%였고, 의료보험가입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8.9%를 차지하였다. 보험료 체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화 등을 고려한 농촌의 가구 유형에 맞는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 현황(2004년) <단위 : 천명>

구분	연금가입대상 (18-59세)(A)	연금가입자 (B)		납부예외자 (D=A-B)	납부율(%) C/B×100
		보험료납입자(C)			
계	506	355	270	151	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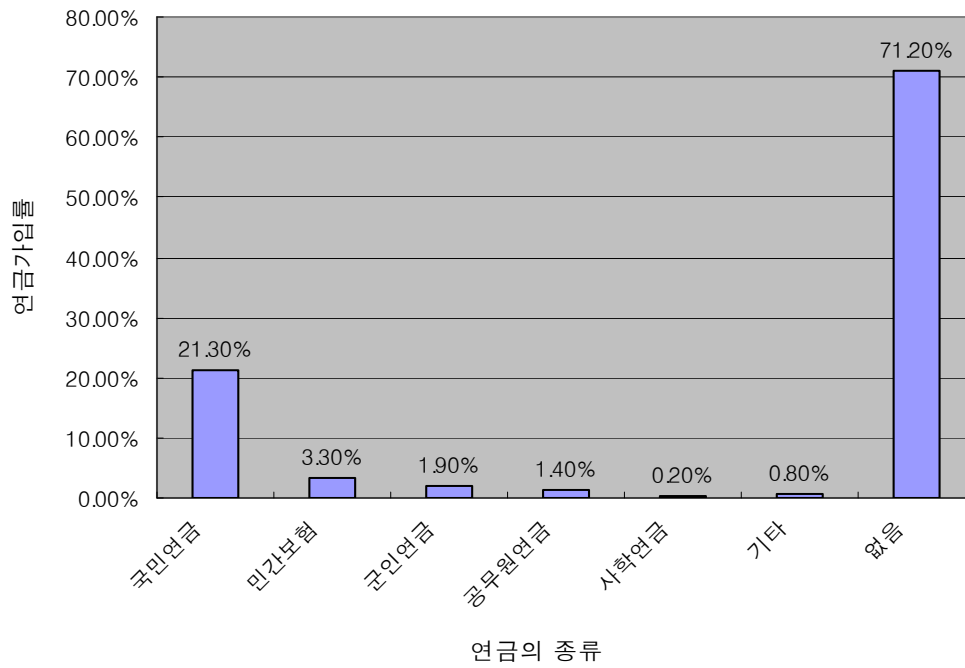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촌 복지·교육·산업 관련 업무 참고 자료. 농림부 농촌사회과. 2006

<표 6> 농업인 연금수급자 및 미수급자 현황(2004년) <단위 : 천명>

구분	60세이상 (A)			노령특례연금 수급자(D)	연금미수급자 (E=B-D)	연금혜택제 외자 (F=C+E)
	60-70세(B)	71세이상(C)				
계	734	494	240	438	56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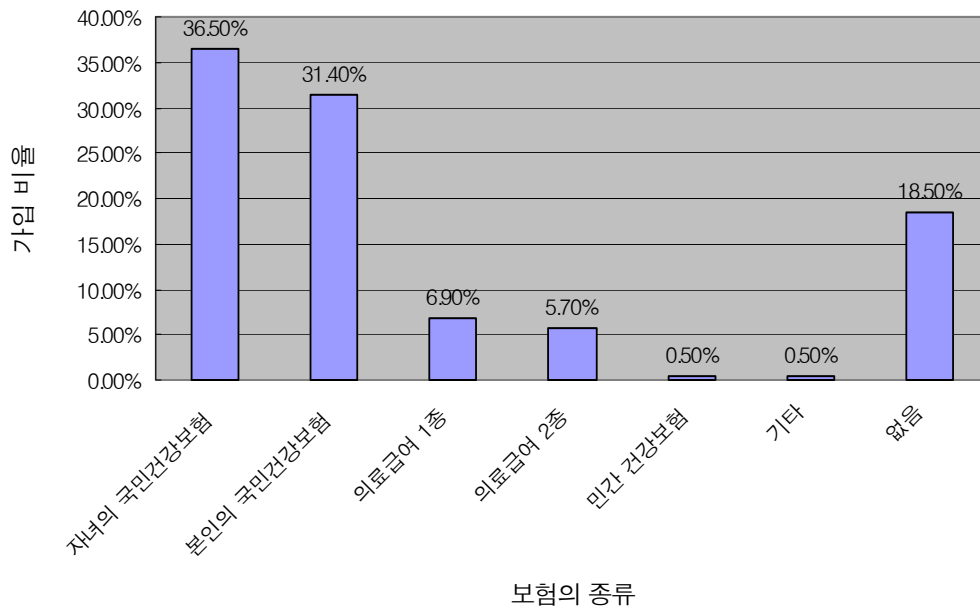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촌 복지·교육·산업 관련 업무 참고 자료. 농림부 농촌사회과. 2006

<그림 3> 농촌 노인 가구 단위 연금 가입 현황



자료 : 박대식과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6.

<그림 4> 농촌 노인 가구단위 의료보험 가입현황



자료 : 박대식과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6

4. 농업재해현황

농작업은 한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다루고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재해의 형태도 다양하고 노출 위험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자영농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현술(2002)의 연구에 의하면 농어민은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성 재해, 농약중독, 농부증,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피부 질환 등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농업인들의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만

일부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표7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농업재해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중 농업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농가경영주의 3%가 채 안 되는 비율이지만,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의 추이는 보여줄 있다. 전체산업의 재해율은 2001년 0.77%, 2002년 0.77%, 2003년 0.90%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에서의 재해율은 1.27%, 1.03%, 1.25%로 1.26배~ 1.6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분의 재해자수는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해 사망자 비율은 0.02%~0.08%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전산업대비 농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명>

년도	전산업				농업			
	대상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대상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2001	10,581,186	81,434	2,748	0.77%	24,312	308	11	1.27%
2002	10,571,279	81,911	2,605	0.77%	31,093	320	10	1.03%
2003	10,599,345	94,924	2,923	0.90%	28,321	354	12	1.25%

자료 : 농업안전작업지침서. 산업안전공단. 2005.

<표 8> 농업부분 사업장 및 재해자 수 변화추이<단위: 개소, 명>

년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비율	사망자수	사망비율
1999	584	15,937	176	1.10%	13	0.08%
2000	1,032	17,435	207	1.19%	4	0.02%
2001	1,839	24,312	308	1.27%	11	0.05%
2002	2,113	31,093	320	1.03%	10	0.03%
2003	2,196	28,321	354	1.25%	12	0.04%

자료 : 농업안전작업지침서. 산업안전공단. 2005.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공제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농업

재해 실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2005년 기준으로 1,726천명의 농업인 중 768천명이 가입되어 있어 가입률 44%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해 전체 농업 재해를 추정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2005년의 공제금 지급건수는 13,930건으로 가입대상의 1.8%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농업인 안전공제 사고유형별 공제금 지급건수 (2005년)

구 분	지급 건수		
	건수 (건)	비율 (%)	
사망	일반	1,685	12.1
	농작업	217	1.6
장해	868	6.1	
입원, 치료비	11,160	80.1	
계	13,930	100	

자료: 농림부. 농촌 복지·교육·산업 관련 업무 참고 자료. 농림부 농촌사회과. 2006

농업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농촌주민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농기구·기계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남자는 1,000명당 83명, 여자는 1,000명당 65명이라는 보고 된 바 있고(손명호 등, 1993), 1년 간 남자는 6.52%, 여자는 0.03%가 사고를 경험하였다(김두희와 정철, 1998).윤희섭(1999)의 연구에서는 농작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지역의 손상 및 중독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100명당 4.2명, 여자는 100명당 1.9명이 손상 및 중독을 경험했다.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은 농민에게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문제로서 선명훈 등(1991)은 조사 대상 농민의 81.9%가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통증의 위치는 요추부, 견갑부, 상지의 순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김귀남등(1999)의 연구에서는 요통의 유병률이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중독 사고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경순(1997)에 따르면 농약 중독을 경험한 비율이 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경무 등(2000)에 의하면 농약 살포와 관련하여 가족이 농약에 중독된 경우도 7.1%로 보고되었다. 임상혁 등(2002)은 농업인의 약 40%가 농약중독을 경험했으며, 중증 중독의 비율이 26.1%를 차지하는 등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고한 바 있다.

농약에 의한 사망통계는 사망신고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데 매년 1,2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2000년에는 1,488명이 사망하였음(보건복지부, 2001). 대부분 자살 목적의 고의적 음용이 원인이었다.

농약 중독의 경험률은 조사에 따라 7.0%에서 86.7%로 다양하다. 이런 중독 증상은 급성적인 것이며, 농약 살포 중 사망하는 경우도 1996년도 3명, 1997년도 4명이 발생하였다(농업진흥청 자료).

<표 10> 농약 중독조사 결과

조사자	조사년도	조사대상(명)	중독경험률(%)	비고
정중학	1974	1,150	33.4	
김영환	1975	469	41.3	
임현술	1980	413	45.6	지난 10개월
이택구	1980	478	44.1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1982	203	19.0	
서울대 보건대학원	1983-1985	465	57.0	
농촌경제연구원	1988	1,107	44.0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510	56.3	
연세의대, 보사부	1991	1,032	20.8	
전남의대	1992	8,420	7.0	지난 1년
대구효성가톨릭의대	1994	142	25.4	지난 1개월
이경무 등, 2000	1999	390	86.7	1가지 이상 증상

출처) 손석준 등, 1996; 이경무 등, 2000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등은 대표적으로 논과들에서 작업 중에 감

염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전염성질환의 규모를 살펴 보면 농작업과 관련된 전염성질환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표 11> 농작업 관련성이 높은 감염성질환의 연도별 발병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쯔쯔가무시	277	1140	1342	1758	2638	1784	1415	4699
렘토스피라	4	90	130	106	133	122	119	141
유행성출혈열	104	215	196	203	323	336	392	427

자료 : 보건복지부

농사짓는 과정과 농업 환경은 분진, 포자, 화분, 독성 물질 및 가스에 노출되어 호흡기 증상과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보고된 농업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환 및 원인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내에 보고된 농업과 관련된 알레르기 원인

항원물질	진단	관련직종	보고자, 보고년도
미삼 분진	천식+비염	목재 가공업자	1982
사슴털	천식	사슴 사육가	1985
집먼지와 메밀껍질	천식	메밀 베개 사용	장양수 등, 1985
밀가루	천식	제빵공	1986
미삼 목재 분진	천식	목공	구철회 등, 1986
쌀겨	천식	쌀가게 경영자	1987
토끼털	비염	양털 직조공장	1990
소털	천식	축산농	남동호 등, 1995
엘크 사슴 털	천식	사슴 사육가	오상우 등, 1997
느타리버섯 포자	과민성 폐장염	버섯 재배농	이문우 등, 1998
영지버섯 포자	천식	버섯 재배농	김미경과 이경수, 1999
연초	천식	연초 제조 감독	전형정 등, 1998
굴응애	천식	굴 농가	김윤근, 1999
점박이응애	천식	배과수원 주위 거주민	지영구 등, 1999
일본 삼나무 분진	천식	목공	이수걸 등, 2000
소먹이 건초더미	과민성 폐장염	목축업	박홍우 등, 2000
굴응애	알레르기	유자재배 종사자	김윤근, 2001

출처) 박해심, 1993

농부증은 1943년 일본의 쿠마가이(Kumagai)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농촌인의 50%정도가 어깨결림, 뒷머리의 압박감, 위 및 하복부의 팽만감, 요통, 심계항진, 손가락의 감각이상, 어지러움, 흉부 및 사지의 동통과 같은 증세들을 호소하므로 이를 농부병이라 칭하였다. 일종의 증후군(symptom complex)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특정하게 많이 나타나며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경화, 신장질환과 같은 일반 질환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적절한 건강 조사방법이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건강지표가 될 수 있다(남택승 등, 1980). 박순우(1997)의 연구에서 농부증의 유병률은 23.0로 나타났고, 장성훈등(1998)이 충북지역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부증 유병률은 남성에게서 21.0%로, 여성에게서 45.1%로 나타났다. 박재범등(200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여 전체 연구 대상자의 농부증 양성률은 28.9%였으며 남자의 농부증 양성률은 16.4%, 여자의 양성률은 45.2%

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농업인은 각종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및 작업 방법에서 오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농기계 보급률의 증가와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 증가는 농기계 사고와 농약 관련 중독 사고 등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확한 재해 통계조차 산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에서의 재해발생률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재해발생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에서 나타나는 재해는 산재보험이라는 형식으로 치료를 통한 작업장 복귀와 요양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재해는 그러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보면 농민들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5. 연구 목적

연구 결과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선진외국 역시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기간산업의 하나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도 농업인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관리체계의 구축방안으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및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도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공제보험의 확대 그리고 독자적인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도입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3가지 방안에 대한 도입에서의 선결과제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3가지 방안에 대한 도입에서의 구체적 선결과제는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본 연구진이 연구하여야 할 소주제이다.

- 1) 보험가입대상 : 겸업농가의 포함 여부, 가족구성원의 포함 여부, 고령농업인의 제한 여부
- 2) 재해보험료 : 급여의 기초소득 결정, 보험요율의 산정
- 3) 보험급여의 수준 : 산재보험과 동일 수준의 적용 여부
- 4) 업무상 재해, 질병의 인정 범위 :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 대한 방안
- 5) 재해보험 운영방안 : 강제가입 또는 임의 가입, 정부지원과 방식,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 6) 재해보험 운영기관 : 정부주도 또는 운영위탁, 운용비용의 산정
- 7) 예방과의 연계 및 의료전달체계 : 보험기관에서의 예방업무 수행 여부, 의료 전달체계 수립

이러한 선결과제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도입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다른 주요한 목적이 된다.

II.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및 해외 벤치마킹

-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제도 조사
-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 조사

2. 농업인 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국내 관련 자료의 분석

- 농업인 인구 명부에 대한 분석
- 농업인 건강보험 이용 자료에 대한 분석
- 근로복지공단 산재 자료에 대한 분석
- 재해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분석
- 근로복지공단 운영 비용에 관한 분석
- 산업안전공단 운영 비용에 관한 분석
- 농협 농업인안전공제 자료에 대한 분석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 농민 단체와의 간담회

4. 설문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반 농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보상 보험제도의 수용도 조사

Ⅲ. 연구 결과

1. 농업인 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1)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식

- 박찬임(2002),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2002)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점진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 내에서 자영 농업인에게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조	내용
강제적용 여부	임의적용
적용연령	65세까지 적용, 단 공적연금 수급자는 제외
재원부담 방안	피보험자 + 정부 보조(농어촌 특별기금 가능성 타진)
요율 결정방식	업종별 요율 적용
기준소득 결정방식	소득기준 중 본인 선택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농수협외의 대행 가능성 검토

자료 :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2002.

(1) 적용 범위에 대한 고려

농업인을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시키고자 할 때 적용 범위 선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연구자는 농업인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사실이 적용 대상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이면서 비임금노동자인 경우,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을 산재보험이 담당할 것인지, 국민연금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농민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정적 문제와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 방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및 수급 대상을 원용하여 65세까지 신규 가입과 수급 대상을 한정짓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고용보험은 신규 가입은 60세까지, 급여 지급은 65세까지인데,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의료 처치 및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 연령도 65세까지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2) 비용 부담 방식과 강제 적용 여부

산재보험의 경우 비용 부담은 100%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영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이 저소득계층인 것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심해 강제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 적용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농업인이 소수일 것이기에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강제 적용 방식으로 하고, 보험료의 국고 보조 수준을 높여, 농업인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재해 보상을 위해 국고가 보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 급여기초소득의 결정

임금 노동자는 급여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계절별 소득의 차이가 심해 이러한 평균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연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 연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적용 구조를 임의 적용 방식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기준소득액 중 자신에게 적합한 소득액을 농업인 자신이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 및 급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요율결정방식

자영업 단일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농업(기업농) 단일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속에서 농업 단일요율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5) 가입시 건강진단

임의가입방식으로 할 경우 질병이 있는 농민이 다수 가입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시 건강진단을 통해 가입 직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6) 급여 내용, 수준 및 운영 기관

특별한 고려 없이 현행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였다.

(7) 이 안에 대한 평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 제도를 근간으로 적용 대상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농업인의 재해 보상을 산재보험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안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적용대상과 자영 농업인의 노동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의가입 형식의 산재보험 적용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강제가입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농업인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정부와 농업인간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며, 이러한 보험료 부담 비율에 대한 농업인의 동의와 더불어 정부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적용 대상에 대한 고려에서 연령에 따른 고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용 대상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영 농업인(겸업농, 농가 세대의 가족구성원 등) 중 어디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급여기초소득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임의가입 형식을 전제로 본인이 기준소득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강제가입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 외에 다른 적절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여 내용이나 수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 없이 형행 산재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작업 특성상 휴업 급여 지급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대다수의 농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농작업 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직업성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규 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도입 방안

- 이희춘(2003), 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농림부.

(1) 보험 적용 대상

이 연구에서는 아예 고령농업인은 제외하고, 60세 혹은 65세로 적용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겸업농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초기단계에는 전업농가와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이상인 1종 겸업농가의 농업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2종 겸업농가의 경우 선택적으로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는, 농가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조건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보험료 부담 방식과 강제 적용 여부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가 상당 부분의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하여

강제 적용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것을 가정하였을 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 1안 : 정부가 전체보험료의 50%를 지원
- 2안 : 정부가 사업비 전액과 순보험료의 50%를 부담
- 3안 : 정부가 가입자당 정액의 보험료를 지원

고려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재해보험 도입 초기에는 전체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급여기초소득의 결정

급여기초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도 몇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안으로는 미리 정해진 몇 개의 기준소득액 중 농업인 본인이 적합한 소득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임의적용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이 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은 대신 보험료 구조가 복잡해지며, 정부 재정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안으로는 기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추정 소득금액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입자들이 요율산출기초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소득을 기초로 할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안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단일기준(농업인 1인당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운영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역진적 보험료 부

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보험 급여의 수준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험료 부담,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 고령화로 인한 급여 중복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분으로 한정하고, 유족급여, 장해급여는 국민연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0% 감액 지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의 급여 내용과 수준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5) 보험요율 산출

산재보험상의 기업농의 산재요율을 기본으로 하여 급여 차이와 위험률 보정을 한 적정 보험요율을 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6) 재해보험기금 조성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기금 형태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 고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7) 재해보험의 운영기관

정부(농림부) 직접운영 방식, 운영 위탁 방식(농협 등),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8) 이 안에 대한 평가

이 안의 문제점은 기존 산재보험 틀 밖에 독자적인 재해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강제 가입 형태로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 있어 연령 제한뿐 아니라, 겸업농, 가족구성원 포함 여부까지 고려하여 세밀한 규정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여기초소득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준소득 설정하여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것 외에, 국민연금 소득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 농업인 평균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급여 수준과 내용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운영기관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농작업 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선진국의 농업인 재해 보상 체계 검토

1) 외국 산재보험의 농업인 적용범위(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서 처음 도입시에는 피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서 농민,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가정주부, 학생 등까지도 작업 중 재해를 당할 경우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국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본 결과 전국민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취업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등 미취업자도 일부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으며, 취업자에 대한 적용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 피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7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고용인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한 7개국 중에서 피고용인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한 국가가 3개국, 기업규모 및 근로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서 전체 피고용인 중 일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국가가 4개국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대상으로 한 23개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가 14개국, 자영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9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OECD 국가 중 약 77%의 국가가 피고용인은 물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에 대해서도 일부만 적용하는 국가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국가	취업자				미취업자 (일부 혹은 전체) ³
	피고용인		피고용인 + 자영업자		
	일부 적용	전체 적용	일부 적용 ²	전체 적용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⁴	벨기에, 스페인,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체코, 멕시코 룩셈부르크,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그리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30개 국	4개국 (13%)	3개국 (10%)	9개국 (30%)	14개국 (47%)	8개국

주 : 1) 네덜란드는 질병과 장애 프로그램 하에서 전국민이 일괄 적용됨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은 자발적 가입이 가능

3) 미취업자에는 학생, 주부, 유치원생 등이 포함됨(네덜란드, 뉴질랜드-전국민 대상/독일, 룩셈부르크-학생, 주부, 가사노동자/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학생, 덴마크-부모의 산재로 인한 선천성 장애자) 여기에서 미취업자가 포함된 국가는 앞의 30개국과 중복됨

4) 미국은 각 주에 따라 농민, 가정부, 비정규근로자, 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는 주도 있음

자료 :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용인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이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각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은 자영업자 중 농민과 일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기술자만이 일반 산재보험 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의 가입시는 개별 가입이 불가능하고, 동업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가 고용주의 역할을 하

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① 특별가입제도의 취지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들의 산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주나 자영업자 중 업무실패나 재해발생 상황 등을 미루어볼 때 근로자에 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제도 본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또 산재발생시 업무상 외의 인정 등 보험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산재보험의 가입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특별가입제도는 1965년에 만들어졌지만, 특별가입제도를 만들기 이전 이미 목수, 미장이, 비계공, 석공 등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관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동업 조합을 통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특별가입제도는 이것을 확대해서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특별가입제도 가입대상

특별가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업무의 실패, 재해의 발생상황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가?

둘째 업무의 범위가 비록 근로계약, 노동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 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실패에 있어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더불어 보험관계의 적정한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기준을 갖고 정한 특별가입제도의 대상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과 일부기술자에 한정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자영업자 중 다음의 일을 하는 자

- a.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 화물의 운송사업
- b.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또는 해체, 그리고 그 준비의 작업
- c.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집 작업
- d. 임업사업
- e. 의약품의 배치 판매사업
- f. 재생용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 등의 사업

B. 농민 중 재해의 위험이 높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

- a.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경작 등 작업
- b.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의 작업
- c.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1972년 정령 제318호에서 지정된 자
- d. 농약살포작업
- e. 소 말 돼지와 접촉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작업

③ 특별가입제도운영방식

특별가입은 가입대상 개개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단체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 단체는 보험료의 납부 등 사업주로서 일체의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보험가입 수속을 하는 것이 지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의 계산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액을 12등급으로 지정고시하고, 특별가입자가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 변경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방 근로기준국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한번 결정되면 당해 보험연도에서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독일

독일은 자영업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가내하청업자 아동 및 학생에게 까지도 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농민의 경우는 분립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산재보험 강제적용 대상자는 피고용인, 직업훈련자, 장애인 전용 사업장 종사자, 가내수공업자 및 가족종사자, 농민 및 가족종사자, 어민 및 가족종사자, 유치원·탁아소의 아동, 학생,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 된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 방문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농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자영업자 및 비취업자에게까지 산재보험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독일 전체의 농민사회보험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어 재해보험은 농민의 사회보험 중 한 종류에 속한다.

①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농업부문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 B. 농업부문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주의 가족
- C. 농업부문사업에서 주식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법적형태로 정규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종사하는 자영업자
- D. 농업부문사업에서 직접농업의 안전 감독 또는 장려에 주로 기여하는 명예직에 있는 자

E. 농업부문직종연합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단 당해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이 이 사업을 관할하는 경우에 또한 농민을 제외한 기술자나 상인과 같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임의적용대상이었으나 2000년부터 일정소득 이하의 유사자영업자인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는 산재 등 생활상의 위험에서 이들 유사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급여의 종류

독일의 보험급여의 특징 중 하나는 농업재해 예방의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조합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의 제공이나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업재해 예방 규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 농업인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치료는 현재 국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같다.

직업보조의 급여는 생산능력의 재화로 영구적인 직업재활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직업적응, 전업교육, 보충 교육을 통해 직업에 적응하는 기회를 주며, 농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이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해급여는 국내 산재보험제도와 비슷하나, 장해 판정 시기가 사고 후 13주로 국내보다는 매우 빠른 편이다.

③ 재정

보험료의 책정 기준은 산재보험조합의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작목별(경영위험별) 사고위험율을 기초로 농지면적 기준, 농업 가치 기준, 농업 수요 기준 등 여러 기준을 혼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농민의 사회보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는 농업인 재해보험에 41%, 농민 연금에 70%, 의료보험에 45.6%, 경영이양연금에 100% 등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1987년). 제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초기에는 약 50% 정도이었으나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보험제정의 약 40% 정도를 예방 급여 형식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3) 기타 국가의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여부

① 농업인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제도는 없다. 덴마크는 산재나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어업과 관련한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일반 산재보험제도가 적용 된다.

② 농업인의 산재보험이 임의 가입 형식으로 적용되는 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이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의 자영업자는 모두 보편적인 보호범주를 가진 일반사회보험제도에 강제 적용된다. 농민 자영업자는 일반산재보험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단 어민은 강제가입 해야 한다.

③ 농업인의 산재보험이 강제 가입 형식으로 적용되는 국가

프랑스에서는 농민은 사적인 생활에서의 사고·산재 및 직업병을 포괄하기 위해서 사고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보험은 환자의 자부담 없이 의료비, 보조구 비용, 기능적 재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장애의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기술자와 상인의 경우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강제제도는 없다. 그러나 피용인과 동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는 임의가입해서 각출금을 낼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반산재보험제도에서 농장경영자와 가족종사자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농민은 농민사회보험기금에 강제 가입해야 한다. 전반적 급여수준은 일반제도와 동등하다. 연금의 계산은 정액제로 한다. 기술자와 상인은 일반산재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보장 받는다. 급여는 통상 일반산재보험제도의 급여수준과 같다.

그리스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농민에 대한 강제적인 기본 제도를 만들었다. 1999년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개의 보험기금이 합쳐져서 자영업자 보험기구(Insurance Organization for the Self-employed(OAEE))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했다. 특히 이 기구는 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보험기금(TEBE)과 상인보험기금(TAE), 운수업자를 위한 퇴직기금(TSA)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산재에 대해서는 단지 하루만 일을 했어도 장애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 밖에서의 재해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려면 보험기간의 절반이 요구된다.

스페인에서는 농민은 산재보험제도에 강제 가입된다. 완전장애나 일시적인 소득중단시, 유족급여시 최소한도의 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기술자와 상인에 대해서는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도가 없다.

외국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를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작업중 재해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이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임금근로자를 농민, 기술자, 상인으로 구분할 때 최소한 농민, 더 나아가 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자는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표 15> 자영업자(농업인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방식

구분		강제적용	임의적용
일반 산재보험제도에 통합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자영업 산재보험 분 립	농민 등 자영업자		포르투갈
	농민과 기술자, 상인분립 제도	농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기술자, 상인 등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EU 국가들을 보면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영업자 전체 혹은 일부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면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3개국 중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에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경우는 5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분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분립형 제도를 택한 국가를 보면 농민과 기술자, 상인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를 분립해서 운영하는 국가가 7개국이었었는데, 이들 7개국 중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경우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3개국 이었고, 독일, 프랑스, 핀란드는 농민에게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지만 기술자나 상인에게는 임의 적용되고 있었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농민만이 산재보험에 강제 적용되고 다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특별가입제도를 만들어서 농민과 재해의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분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전체 자영자를 모두 적용범위로 하고 농민을 강제 보험으로 할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전체 자영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한 것이 아니라 재해

위험이 높아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방식은 전체 취업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취업자에게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산재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인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자발적인 보험접근을 제외한 모든 산재보상 프로그램은 어떤 보험제도를 통해서 약속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 때 가능한 관리운영체계는 공적기관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사적기관과 공적기관이 경쟁하는 체계, 경쟁적인 사적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이다.

(1) 공적기관 단독 운영

많은 국가에서 공적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산재보험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의 질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공적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음의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둘째,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필요치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걷어진 보험료 전부는 급여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보험료를 너무 낮거나 높게 책정하였을 경우 경쟁자에게 손님을 빼앗긴다는 염려 없이 다음해 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더 탄력적일 수 있다. 넷째,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수급의 요구를 더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경쟁적인 사적기관에서 운영

사적기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이 효율적이면 가장 낮은 가격에 양질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경쟁은 마케팅 비용을 낳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보험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소수의 국가에서 가능한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허락된다.

(3) 공사 혼합관리운영체계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의 경쟁체계는 공적기관 단독 관리운영체계와 경쟁적인 사적기관의 관리운영체계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다. 공·사 혼합관리운영체계는 공적기관도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의 운영이 사적기관이 갖는 경쟁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해의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산재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적기관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공적기관의 효율성과 사적기관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 현실이다.

3) 산재보험의 적용

(1) 산재보험 적용의 대기기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은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산재보험의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간혹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재해시 급여를 즉시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대치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재해시 즉

각적으로 반응했을 고용주 대신 그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급여를 일정 기간의 대기기간 이후 지급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이 일반 사회보험제도와 통합되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산재보험이 확대되었을 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취해진다.

(2) 적용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형태는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임시직, 가사근로자, 농업근로자 등 특정 고용형태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위험한 직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산업재해 및 질병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몇몇 근로자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시간제 혹은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을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편의성이다 이들은 고용기록이 거의 없고 적용시 근로자 1인당 높은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을 적용 제외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크거나 산업과 관련 없이 심각한 직무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는 집단은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고소득 근로자 등이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는 아니지만 직무관련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주인 동시에 근로자라는 면에서 일반 임금근로자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또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점차 이들을 포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방식은 강제적용보다는 임의적용이 많다.

산재보험은 처음에 임금근로자를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합 사회보험체계에서 산재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 이들이 산재를 당해서 소득능력이 상실될 경우 결국 국가사회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는 국가가 소수이지만 생겨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적용제외하는 근거는 산재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만큼 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용주에 대한근로자의 해결책을 산재보험급여로만 제한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더 강하다.

(3) 보상대상이 되는 부상과 질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이 아닌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산재보험관리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려면, 사고는 일반적으로 고용과정으로부터 혹은 고용 중에 일어나야 한다. 산재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검증이 용이하지만 직업병이나 출퇴근사고의 경우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고가 정신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보호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사전에 갖고 있던 취약함이나 질병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질병이 더 심

각해지는 원인이 되었다면 고용주의 책임은 감소되는가, 휴식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규정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특히 직업병은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많은 질병이 직무와 관련된 이유와 직무와 관련 없는 이유 모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병은 근로자가 질병을 유발하는 자극에 장기간 노출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석면증이나 진폐증은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생하는데, 근로자는 최초로 노출되었을 때부터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고용주가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직업병 목록의 질병에 한해서 직업병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점차 질병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록 직업병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위해환경 노출기간 등을 지정하여 급여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산재보험급여

① 요양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현금급여, 사망에 대한 현금급여, 재활을 위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요양급여의 구조,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적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급여의 제한 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

A. 요양급여의 구조

산재보상 프로그램은 직무관련 사고 및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통해서만 의료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보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수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프로그램과 연관시켜서 산재사고시에도 일반 의료보험체계를 이용하게 하기도 한다.

일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 의료서비스체계와 산재보험체계를 분리한 요양급여 구조를 선택하기도 한다 즉, 대다수의 산재 및 직업병은 특별한 처치를 필요로 하고, 의료적 처치와 평가를 다른 산재급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의료서비스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의료프로그램과 통합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산재보상 단독 프로그램보다 급여의 수준이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B.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이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누가 공급하는가의 문제이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의료요원들이 공급하는데, 외부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산재보험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며 산재보험기관에서 독자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산재보상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분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체계 내에서 직접적인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의료제공이 산재프로그램에서 치료에 대한 통제를 더 잘할 수 있고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공급독점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C. 적용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산.재보상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은 적용 불가능한 소수의 서비스 이외에는 모두 적용되는 **negative list** 방식일 수도 있고, 적용가능한 서비스만을 열거하는 **positive list** 방식일 수도 있다. **negative list** 방식은 산재보험의 서비스가 고용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보다 관대한 급여제공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positive list 방식은 갑작스럽게 추가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비용의 면에서 절약적이지만, 근로자의 처지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D. 비용 및 기간의 제한

산재보험 프로그램의 비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급여의 비용이나 기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급여를 일정량으로 제한하거나 고용주에게 특정 서비스 비용으로 일정비율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서비스의 지급기간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실제 산재보험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의 제공범위나 기간을 최대한 관대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제한이 비용을 낮추고 상당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혹은 별로 중요치 않은 의료처치를 회피하게 유인하기 때문이다.

② 장해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임금손실 혹은 예상되는 임금손실을 대치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급여의 종류로는 치료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휴업급여, 근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완전장애에 대한 장해급여, 근로능력의 상실이 부분적인 경우 지급하는 부분장해급여가 있다.

③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임금손실 혹은 예상되는 임금손실을 대치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휴업급여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기기간의 여부, 수급기간의 제한, 급여량의 계산방식,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의 여부 등이다.

A. 휴업급여 대기기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즉시, 혹은 2일, 3일, 혹은 7일과 같은 일정한 대기기간 이후 개시된다. 대기기간은 단기적인 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산재보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기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고 산재보험 프로그램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대기기간 중의 급여 또한 소급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가 상당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휴업급여는 대기기간이 없지만, 직업병이나 자영업자의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갖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다.

B. 급여지속기간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완치되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서 장해급여의 수급을 받게 될 경우 중단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산재보험제도에서 비록 수급자가 아직도 치료를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6개월, 1년, 2년 등 휴업급여의 지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급여지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의 비용을 낮추고, 그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장애판정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C. 휴업급여량의 계산방식

휴업급여의 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피재자의 과거 소득과 관련시켜서 계산하는 방식과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주는 방식이 있다. 정액급여를 선호하는 국가는 급여를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관리운영이 더 어렵고, 사회보험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급여를 과거의 소득에 기초하려면 개개인의 임금기록을 필요로 하고, 과거의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며, 결정을 해보아봤자 그것은 실제 임금손실에 대한 대리 지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보험급여는 근로자가 과거의 소득과 관련없이 미래에 예견되는 최소한도의 재정적 욕구에 기초해야만 한다.

소득과 연계된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휴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00% 이하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휴업급여는 면세로 제공되고, 수급자는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일에 복귀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이 때 결정되

는 소득대체율은 앞에서 언급한 세금부담의 정도, 근로의 수고가 덜어진 정도, 근로유인에 대한 그 사회의 합의와 관련이 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논제는 소득대체율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소득, 재직기간, 장애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대체율일지라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생활에 필요한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과거의 소득과 역으로 주어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소득을 소득손실에 대한 완전한 대체 변수로 볼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휴업급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장애기간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데, 지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생활을 보장하려는 조치이고 지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해서이거나 피재자가 더 낮은 생활수준에 적응할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급되는 급여의 최대최소 한계를 설정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데, 이는 휴업급여가 피재자의 실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피부양자를 가진 근로자의 부가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부양자 한 명당 증가액은 정액이거나 근로자의 과거 소득의 일정비율이거나 근로자의 장애연금의 일정비율이다.

그러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 휴업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면 프로그램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부양자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휴업급여가 소득손실을 대치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소득은 부양가족의 수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휴업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보충급여가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보충급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장애급여

완전장애급여와 부분장애급여는 그 지급구조가 휴업급여보다 복잡하다. 휴업급여가 대부분 소득손실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서, 장애급여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일반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산재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장애급여는 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 연관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5) 산재보험 재정구조

① 산재보험 재정부담 주체

산재보험 프로그램은 고용주, 근로자, 정부로부터 다양한 비율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고용주의 기여는 개별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일 수도 있고, 고용주가 속한 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재해율 혹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배상책임을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최소한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산재보험이 일반 사회보험제도의 일부로 된 국가를 제외하면, 고용주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고용주가 비용을 전부 부담할지,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전가할지는 많이 논쟁되고 있는 주제이다.

산재보험이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통합된 경우, 일반 사회보험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자, 고용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도로부터 포괄되는 재해는 직무관련성을 띤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고, 근로자의 각출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근로자는 비용부담을 통해서 개인적 책임을 고양하고 프로그램 급여와 비용을 더 잘 인식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단독 산재보험제도하에서 보호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혜택을 받는다.

둘째, 정부는 소득세, 담배 및 주류소비세 등 다양한 조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전체 인구에 분담시킬 수 있다. 비록 산재보험이 일반 사회보험제도의 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각출을 통해서 산재보험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전체인구가 산재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믿거나 산재보험이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각출할 수 있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 부담을 한다. 부담의 범위는 재정의 적자분을 보존해 주는 정도에서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다양하다.

② 산재보험 요율체계

고용주의 산재보험 각출금은 정률일 수도 있고, 산업 혹은 개별 회사의 손해율, 혹은 모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개별실적요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개별실적요율은 자신의 손해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둘째, 고용주는 산재보험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개별실적요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손해율에 따른 비용부담이 공평하다는 주장은 가치판단적인 것으로 그 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요율이 과거의 비용과 관련된다는 것을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이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해발생과 요율을 연관시킴으로써 상당수 기업주, 특히 대기업의 기업주가 근로자의 재해를 숨기거나 장애인 근로자 등 사고날 가능성이나 사고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 유형의 근로자 고용을 더 꺼리게 할 수 있다. 산업별 요율제도는 개별실적요율제도보다 훨씬 덜 복잡하다. 이 방식은 개별실적요율제도와 정률제도의 중간적인 것이다.

③ 산재보험 재정방식

산재보험 프로그램이 완전적립식이 아닐 경우, 산재보험 비용은 시간에 따라서 할당된다. 완전적립식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적으로 만일 오늘 종결되었다면 종결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미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요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서, 휴업급여는 받았지만 부가급여의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의 요구가 아직 조사과정 중에 있을 경우로서 너무 최근에 발생해서 종결시점까지 보고되지 못한 급여에 대한 비용이다. 둘째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은 먼 후일에 발생할 산재보험의 급여이다. 즉, 직업병과 같이 노출된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야 발병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물론 완전보장이 목적인 제도에서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급여요구의 의

무를 비의도적으로 저평가한 이유로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과방식은 매년 있을 수 있는 소규모의 편차를 다루는 소규모 신탁자금만을 가지고 당해 연도 비용을 당해 연도 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단독으로 관리운영하는 산재보험제도와 일반 사회보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과방식을 쓴다. 이 때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참여는 강제적이고, 필요하다면 세금이 너무 낮았던 과거 수년간을 따라잡기 위하여 조세가 증가할 수 있다.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이고 대부분의 납세자가 젊은이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세대간 계승되는 경향을 띤다. 궁극적으로 만일 인구학적·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한다면, 젊은 세대는 자신이 받을 급여의 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3.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제도 모델 개발

1) 모델 개발의 원칙

(1)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도 도입

농업인의 재해 보상 제도의 운영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 조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주된 재원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인데, 이는 다른 일반인들의 재해 및 질병 보상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서비스의 질,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각각의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해 보면 아래와 같다. 조세 방식은 비용 통제, 사회적 연대, 재원부담 형평성 등에서 우수한 제도이다. 반면에 사회보험 방식은 소비자 선택,

인프라 구축 용이성, 보편적 적용, 권리성, 이용자 부담, 서비스의 질, 기존제도와
의 정합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분야	사회보험 방식	조세방식	
		선별적 사회서비스	보편적 사회서비스
	비용통제	×	○
	소비자 선택	○	×
효율성	재원조달 용이성	○	△
	인프라 구축 용이성	○	△
	관리효율	○	△
형평성	사회적 연대(보편성)	○	△
	권리성	○	△
	재원부담 형평	△	○
	이용자부담 형평	○	△
효과성	서비스의 질	○	×
도입 가능성	기존 제도와 정합성	○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보장체제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 세 가지
로 압축될 수 있다.

방안 1 : 조세방식으로 시작, 제도의 안정과 인프라의 일정수준 확충 시점에서 사
회보험방식으로 전환

방안 2 :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국고지원에 의한 부조방식 병행

방안 3 : 조세방식으로 운영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 방식으로 농업인 재해보상 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 방식으로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와 같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재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체계와의 정합성으로 고려하더라도 사회보험 방식의 보상 시스템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표 17> 농업인재해보상 방식의 방안 비교

	방 안 1	방 안 2	방 안 3
재정방식	조세방식 → 사회보험방식으로 이행	사회보험방식 (국고지원+빈곤층 부조)	조세방식
급여 적수급자	초기 취약층 →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	모든 농업인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비용 부담자	전국민(이후 농업인)	모든 농업인	전국민
재원	조세 → 보험료+조세	보험료+국고+빈곤층 부조(국고지원)	조세(일반재정 또는 목적세)
장점	· 저소득층 우선보호에 대한 제도의 순응성 제고	· 보편적 확대 용이 · 기존 사회보장체제와 정합성	· 관리비용, 지출통제 용이 · 지방자치체의 역할제 고 가능
단점	· 중간에서의 제도변경 에 대한 농업인 반대 예상 · 확대에 상당기간 소 요	· 또 하나의 사회보험제 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 적정한 급여비 통제곤 란	· 정부재정의 과다 소 요 · 보편적 확대 상당기 간 소요

(2) 기존 산재보험 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를 신설함

기존의 산재보험 제도는 가입대상이 사업주이고 임금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므로, 자영농 개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비임금 경제활동인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재해보상 제도와 기본 조건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산재보험 제도 방식대로 적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재해율 때문에 농업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재보험 역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재해율이 낮은 업종과 재해율이 높은 업종이 위험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 방식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농업인이 산재보험 체계에 편입될 경우 농업인의 위험을 다른 업종의 사업주가 분담하는 방식이 되어 이것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재보험의 직업성 재해와 농업 재해는 특성상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기존의 산재 인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주로 공단이 위치한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농업인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산재보험 제도에 자영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독자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켰을 경우의 문제점

항목	산재보험	농업인 적용확대시 문제점
가입 및 적용대상	가입대상 : 사업주 적용대상 : 임금노동자	가입대상 : 자영농 개인 적용대상 : 비임금 경제활동인구 포함 · 산재보험과 다름
보험요율	업종별 차등 보험요율	· 높은 농업 재해율로 인해 농업인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 · 그로 인한 제도에 대한 저항
보험료분담	재해율이 낮은 업종이 높은 업종의 위험률을 분담	· 높은 농업 재해율로 인해 다른 업종의 사업주가 위험률을 분담할 경우 저항
인정 문제	상당 인과관계 중심	· 인과관계 중심의 인정기준 적용시 어려움이 발생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공단이 위치한 도시에 집중, 농업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성격	사업주 배상 책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	배상 책임 개념 없음

(3)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성을 갖되, 기존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사회보험이 되도록 설계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장 수준이 산재보험의 보장 수준보다 낮으므로, 보장 수준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하되, 기존 사회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차액을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한다. 국내의 산재보험 보장 수준은 외국의 보장 수준과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재정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독일 등에서 도입되는 직업재활을 통한 이농시 직업준비금의 지급은 국내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대부분 고령이라 직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휴업급여 등의 생활보장 급여를 농작물의 피해 정도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안 역시 농업인 재해로 인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도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19> 산재보험 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장애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4) 서비스 제공 체계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최소화함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제도라는 별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인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인재해보험의 대상인 자영업 농업인이 산재보험처럼 많은 수가 아니며, 대부분 농촌에 주거하게 됨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 역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의 건강 보험 체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관리 및 운영 체계 역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제도 모델

(1) 강제/임의 가입 여부, 가입/적용 대상

① 강제/임의 가입 여부

임의 가입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업인을 배제시켜 또다른 소외계층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가입 대상 전원이 강제 가입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라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가입/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농업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가입 대상 중 보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이환된 이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농업인의 정의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농업 사업체에 고용된 농업 노동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자영 농업인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급여 수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농업 노동자가 신설된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든 농업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전업농, 1종 겸업농, 2종 겸업농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명부를 통해 보면,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가족원 또는 세대원이 농업인 명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예를 통해 보듯이 이 들 역시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농업인의 세대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원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강제 가입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추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임금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을 때,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원용하여, 농가의 세대주에게 산재보험상의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대원이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의 세대주가 이들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보험료도 추가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 농가의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세대의 세대원이 농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방식도 원용할 수 있다.

고령 농업인 가입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입 연령에 제한을 두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70세 정도로 가입 연령 제한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40.2%, 65세 이상이 29.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고령 농업인의 가입에 제한을 둔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을 가입/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렇게 할 경우 농가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는 합당한 우려이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고령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타 사회보험 급여, 특히 국민연금 급여와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는 농업인재해보험을 타 사회보험의 보충적 성격의 보험으로 설계하였으므로, 타 사회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 그것을 제외한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재해율이 더 높고 요양기간이 더 길 수 있으므로 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자의 경우 농업재해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고령자를 제외할 수는 없다.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르면 오히려 고위험군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 재해 보험의 목적이 농업인의 건강 및 소득 보장임을 고려하면, 고령 농업인은 농업 재해 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0> 2004년의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천명)

연령대	농가인구	백분율
14세이하	353	10.3%
15-19세	159	4.7%
20-49세	963	28.2%
50-59세	566	16.6%
60-64세	373	10.9%
65세이상	1,002	29.3%
전체	3,415	100%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6)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가입 대상 농업인의 규모를 추계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농가는 약 127만 호, 농가인구는 약 343만 명, 전업 농가는 약 80만 호, 1종 겸업 농가는 16만 호, 2종 겸업 농가는 31만 호로 추산되고 있다.

<표 21> 전·겸업별 농가 (단위 : 호)

년 도	계	전 겸 업 별		
		전 업	1종 겸업 ¹⁾	2종 겸업 ²⁾
2001	1,353,687	884,452	161,660	307,576
2002	1,280,462	861,994	139,182	279,286
2003	1,264,431	812,557	145,434	306,440
2004	1,240,406	784,963	147,120	308,323
2005	1,272,908	796,220	164,976	311,712

1) 1종 겸업 : 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50%이상의 농가

2) 2종 겸업 : 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50%미만의 농가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2006)

이러한 통계청 정의에 의한 농가수가 거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수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가입 대상 인구는 전업농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을 경우 약 80만 명, 1차 겸업농까지 포함시켰을 경우 약 96만 명, 2차 겸업농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약 127만 명 수준이 된다. 전업농가의 경우 세대주의 1인의 세대원이 추가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세대원 추가 가입에 따른 가입자 증가분은 약 80만 명 수준이다. 그러므로 전업농 세대주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80만 명 정도가 가입 및 적용 대상 인구가 된다. 이를 확대하여 2종 겸업농 및 세대원까지 가입시킬 경우에는 207만 명까지 가입 및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계는 현재의 농업인 인구 규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현재와 같이 농업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농업인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입 대상자의 규모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농업재해보상보험 가입/적용 대상자수 추계 (단위 : 명)

구 분	전업농만 가입시	1종 겸업농 추가 가입시	2종 겸업농 추가 가입시
세대주만 가입시	796,220	961,196	1,272,908
세대원 추가가입시	1,592,440	1,757,416	2,069,128

<표 23> 성별 및 호당 농가 인구 (단위 : 가구-호, 인구-명)

년 도	농 가 ¹⁾	농 가 인 구					호당농가인구
		계	남	%	여	%	
2001	1,353,687	3,933,250	1,902,666	48.4	2,030,584	51.6	2.91
2002	1,280,462	3,590,523	1,747,802	48.7	1,842,721	51.3	2.80
2003	1,264,431	3,530,102	1,715,127	48.6	1,814,975	51.4	2.79
2004	1,240,406	3,414,551	1,653,883	48.4	1,760,668	51.6	2.75
2005	1,272,908	3,433,573	1,676,592	48.8	1,756,981	51.2	2.70

1) 농가란 일정규모이상의 경종, 축산, 양잠, 과수, 화훼, 묘포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함.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2006)

이러한 가입 대상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지원을 받는 이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일괄 가입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지원을 받는 이들이 농업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외의 농업인은 자진 신고를 통해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24> 건강보험 체계 내의 농어업인 현황(2006년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계	1,659,100	944,470	612,310	102,320
농업인	1,441,980			
어업인	216,656			
임업인	46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006에서 재구성

※ 참고 : 2006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체계 내의 농어업인수는 332,543명(김상호,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의 농업인 위치에 대한 소고, 농업인재해보험 발전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2006.)

(2) 재정 운용 및 징수 방식

① 재정 운용 방식

재정 운용 방식은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큰 틀에서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급여 중심의 보험 운영이 된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부과 방식의 운영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요양급여 외의 연금 성격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될 때에는 적정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와는 별개로 보험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보험자의 운영비용은 국고에서 100%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②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결정 방식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소득역진적 보험료 부과 체계가 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체계내에서 농업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까지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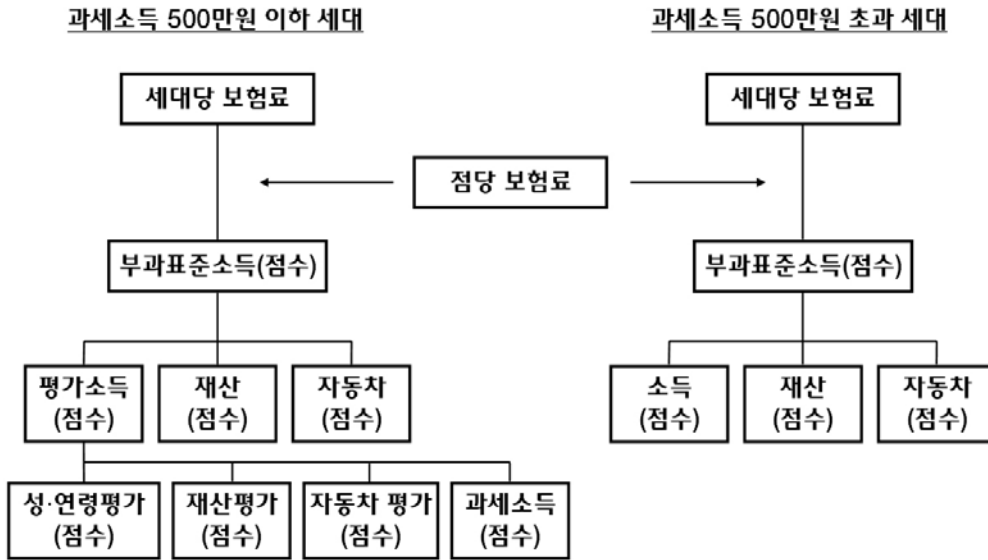
먼저, 미리 정해진 몇 개의 기준소득액 중 농업인 본인이 적합한 소득액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임의 적용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이는 농업인 본인이 기준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소득액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경우 고소득 농민이 임의로 자신의 소득을 낮게 선택하여, 보험 재정에 기여하

는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 원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임의 가입 방식으로는 적합하나 강제 가입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소득에 상관없이 단일기준(농업인 1인당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소득역진적 방식이므로 사회연대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기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추정 소득금액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를 원용하는 것이므로 가입자들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단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의 수가 더 많으므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로 인한 불만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③ 보험요율 산정 및 징수 방식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항을 고려하여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높이면서 적용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초기 보험요율은 적용 대상 규모와 급여 수준에 연동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 징수 관련 업무를 통합하지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별도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요율에 농업인 재해보험요율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5> 2007년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사업종류 (평균요율)	보험요율				사업종류	보험요율			
	'04	'05	'06	'07		'04	'05	'06	'07
	14.8	16.2	17.8	19.5		14.8	16.2	17.8	19.5
1. 광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377	436	459	522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7	8	10	12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78	313	316	304	4. 건설업				
102 채석업	143	155	167	184	400 건설업	33	31	34	38
103 석회석광업	60	56	68	76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27	32	37	41	500 철도·도로 및 석도운수업	5	6	7	8
105 기타 광업	64	60	71	81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17	20	25	27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51	61	76	9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7	61	68	71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2	35	38
200 식품제품제조업	17	20	24	27	506 항공운수업	8	7	8	9
201 담배제조업	7	8	10	12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5	6	7	8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	8	9	11	13	509 창고업	17	19	21	23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을)	17	20	24	28	510 통신업	8	9	11	13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7	59	65	77	6. 임업				
204 목제품 제조업	41	43	47	55	600 벌목업	408	489	611	42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0	23	26	29	601 기타의 임업	24	28	35	
206 신문·화페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5	6	7	8	7. 어업				
207 인쇄업	15	18	19	21	700 어업	124	148	185	222
209 화학제품 제조업	16	19	21	23	701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	-	-	8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8	9	11	13	8. 농업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2	26	32	38	800 농업	16	19	23	27
212 고무제품 제조업	19	22	27	32	9. 기타의 산업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2	26	32	38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9	22	27	31
214 유리 제조업	17	20	24	27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5	18	22	26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30	31	33	37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8	31	35	38
216 시멘트 제조업	26	26	28	31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64	76	92	110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46	45	51	56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1	13	16	19
219 금속제련업	7	8	10	12	905 기타의 각종사업	5	6	7	8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5	36	39	42	907 컴퓨터운용 및 범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4	5	6
222 도금업	21	24	26	28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4	5	6
223 기계기구제조업	24	28	30	33	909 교육서비스업	-	7	8	9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1	13	16	18	0. 금융 및 보험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	5	6	7	8	000 금융 및 보험업	4	4	5	6
226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2	38	47	56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갑)	16	19	23	27	· 해외파견자	14	16	17	19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을)	23	27	29	31	· 임금채권부담금	0.3	0.4	0.4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9	10	12	14	·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4	16	20	23	- 일반 건설업	27	28	28	28
230 기타제조업	26	29	31	35	- 하도급 건설업	34	33	33	34

구분	2004	2005	2006	2007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2,454	12,274	12,061	11,027
기준임금	5,760	-	-	-
시간단위 월 단 위	1,301,760	-	-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고용)	1,969,474	2,314,036	2,141,625	2,311,955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산재)	81,048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금액(월)	-	-	1,600,000	1,650,000
고용보험요율	'07: 실업(9), 고용·직업(2.5, 4.5, 6.5, 8.5)			

④ 보험료 분담 비율

현재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보험료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수의 농업인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농업인의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확인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이상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 2005년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합 계		읍,면지역		농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587,703	77,943,976	555,773	72,125,889	22,982	3,949,566	8,948	1,868,521

결국, 농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재해 보상을 위해 비농업인 국민이 어느 정도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가 제도의 효과적 시행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늘릴 수 있어야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상 결정 체계

① 농업 재해 인정 기준

농업인 재해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는 일하는 공간인 사업장 내에서(사업주 지배하에서) 일어나지만,

농업재해는 일하는 공간과 주거하는 공간이 같다. 농업인의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는지, 주거 생활에서 발생하였는지 판단이 어렵다. 두 번째, 농작업에서 나타나는 유해요인이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유해요인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자이어서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적 발생인지 구분이 어렵다. 그러므로 농업 노동사고 및 질환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농업 재해 판정 절차

판정절차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자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요양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 평가를 시행하여 인정하는 체계를 가진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직업성 질환의 경우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신청하기 어려워 많은 직업성 질환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고, 업무 관련성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 끊임없는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보험의 급여 지급 기준이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직업성 질환의 경우 특정 조건을 지정하고 이 조건에 맞으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재해는 산업재해와는 달리 재해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농업인의 건강 및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결과주의적 방식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까지를 포함하여 농업재해 판정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농업인 스스로 농업재해를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자료에서 농재보험 가입자의 자료를 제공받고, 농

림부 별도의 부처에서 승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르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는 농업재해 인정기준외에 판정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농업 재해 판정 전까지의 의료비 부담

농재보험이 타 사회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앞서 전술하였다. 따라서 농업재해 인정전까지는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농업 재해로 인정될 경우 농업 재해 보험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요양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현재 산재보험은 요양관리 및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별도의 체계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운영비의 막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농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기존의 건강보험 요양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5) 보험 급여의 범위 및 수준

① 요양 급여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항목은 모두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의학적으로 그 필요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 체계 및 산재보험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보상하는 체계로 제도를 설계한다. 기타 재요양 등은 산재보험 요양 체계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단, 요양 종결의 경우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술한 외국의 사례에서는 요양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의 요양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나면 장해급여와 재활급여와 연동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국내의 산재보험에는 이와 같은 연계제도가 없어 요양기간이 장기화되는데, 이를 농재보험에 도입한다면 장기화된 요양기간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도 경제적 타격을 미치게 되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본래의 농재보험 취지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후반에 있는 제정 규모의 산출에서는 국내 산재보험을 준용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산재보험 상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의 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2. 지급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4. 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5. 급여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6. 청구절차

<표 27> 요양비 청구절차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제출(공단 소정양식)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요양비청구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 구비서류 ·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7. 재요양

◦ 재요양 요건

-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

②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재활급여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급여 수준과 방식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장해판정의 경우 노동력 상실을 적절히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판정 체계가 개발되기 전까지 산재보험 판정 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농업인 상대적 저소득계층임을 고려하여 휴업급여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농업의 특성상 상시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상병 수당' 혹은 '인부 고용 수당' 형태의 급여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휴업으로 인한 소득 보장에서 생산물의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역시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재보험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정년인 60세 혹은 65세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 고령 농업인이 많음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7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 중복 급여가 있을 시에는 산재보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산재보험상의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취 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청구시기 : 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 급여내용 : 요양으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 65세이상 재해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감액 지급
- 최초 감액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있어 취업 중에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시행일 2001. 1. 1)

- 시행일 이전 재해자, 즉, 2000. 12. 31이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

의 경우는 미적용

6. 청구절차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부터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 지급 : 2003. 7. 1부터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서 자동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산재보험상의 장해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취 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후 신체에 장애가 잔존하여야 함.
- 장애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표 28> 지급사유, 지급시기 및 내용

구분	지급사유	청구시기	급여내용
일시금	- 업무상장애가 치유된 후 장애 등급 제4~14급장애 잔존시	- 치유후	- 장애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연금	- 업무상장애가 치유된 후 장애 등급 제 1~7급장애 잔존시 · 제1~3급 : 연금 · 제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장애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표 29> 청구 및 지급방법



(X선 사진, 근전도 검사지 등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표 30> 구비서류

- 구비서류
 - X선사진(CT 또는 MRI필름, 근전도 검사지 등) 1매
 -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 관할지사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상의 간병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취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및 종류

◦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②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조정장애 1급포함)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④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서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3. 청구 및 지급방법

◦ 장애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애부위 및 상태와 장애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2를 지급한다.

<표 31> 간병 급여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07. 1. 1~	38,240원/일	25,490원/일
2005. 9. 1~2006.12.31	37,420원/일	24,940원/일
2004. 9. 1~2005. 8.31	34,977원/일	23,318원/일
2003. 9. 1~2004. 8.31	33,600원/일	22,400원/일
2002. 9. 1~2003. 8.31	31,900원/일	21,270원/일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산재보험상의 유족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애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 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상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과 같다.

1. 취 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애등급 제 1급~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표 32>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3. 청구자 : 피재근로자

4. 청구시기 :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5. 청구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한다.

※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산재보험상의 장의비는 다음과 같다.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 청구자 : 장제실행자

3. 청구시기 : 장제실행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표 33>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07. 1. 1~2007.12.31	11,176,020원	7,867,410원
2005. 9. 1~2006.12.31	10,814,947원	7,525,147원
2004. 9. 1~2005. 8.31	10,360,275원	7,078,875원
2003. 9. 1~2004. 8.31	9,932,840원	6,669,440원
2002. 9. 1~2003. 8.31	9,264,595원	6,279,595원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③ 급여 기초 소득의 산정

전술한데로 보험료 부과시에 사용했던 추정 소득액을 급여 기초 소득으로 준용한다. 그리고 최고, 최저 보상제도 역시 산재보험 제도를 준용한다.

<표 34> 산재보험의 보상 관련 고시(2007년 기준)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고시번호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2007. 1. 1	노동부 고시 제2006-21호
	일급 27,840원 (8시간기준)	~ 2007.12.31	
최고보상기준금액 (日)	157,220원	2007. 1. 1	노동부 고시 제2006-37호
최저보상기준금액 (日)	46,933원	~ 2007.12.31	
장의비최고금액	11,176,020원	2007. 1. 1	노동부 고시 제2006-38호
장의비최저금액	7,867,410원	~ 2007.12.31	
간병료 (日)	간호사 58,670원	2007. 1. 1	노동부 고시 제2006-39호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전문간병인) 40,190원		
	가족·기타간병인 (가족간병) 38,240원		
간병급여 (日)	상시간병 38,240원	2007. 1. 1. 부터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06-40호
	수시간병 25,490원		

(6) 보험 운영 방식

농림부가 보험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 업무를 맡도록 하고, 기타 보험 관련 업무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요양 관리 및 진료비 심사 업무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보상 여부 판정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농협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연간 급여 지출 추계

(1) 요양 급여 지출 추계

① 추계 방식 (전업농과 1종 겸업농을 대상)

- ICD10코드에 의한 상병분류상 대분류 S코드(사고성 재해)와 M코드(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95% 이상의 농업 재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S코드 질병과 M코드 질병군별로 건당 산재보험 요양 급여 비용이 농재보험 요양 급여 비용과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산재보험의 경우, 경증의 질병이나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재 통계에 나타나는 경우는 중증의 경우가 많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며 수술 등을 하여 요양 비용이 상당히 높다.

- 1인당 요양급여비 추계는 산재보험처럼 탈락된 사람이 없게 산출되어 연구자의 제안방식(접수 방식)으로 하면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다.

- 1년간 농재보험 가입대상 중 S코드 질병으로 인한 농업 재해율은
 - 산재보험 통계의 농업업종 재해율(1.20%),
 - 농업인공제 자료상 사고 재해율(1.98% 발생일, 2.77% 지급일, 일반재해 포함),
 - 지역 면접조사(16.6%업무상 재해, 6.76% 일반재해 포함),
 - 건강보험 통계(24.0%, 일반재해 포함)
 - 미국 NSC 산재 통계(4.06%)을 대상으로 추계하였으며,1년간 농재보험 가입대상 중 M코드 질병으로 인한 농업 재해율은 8%로 가정(미국 OSHA 통계에 의한 성인 농업인의 연간 손상률)하여 추계하였다. 국내의 M코

드 질병 통계는 연구 결과의 미비로 대략적 산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 사고성 재해는 산재보험에서의 농업 업종의 발생률 1.20%와 지역면접조사에서의 발생률 16.6%를 근거로 추계하였으며, 미국의 발생률을 근거로 추계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한국의 경우 농업인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미국의 발생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 농재보험 가입 인구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 수로 계산하여 계산된 중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이 70%를, 농재보험이 30%를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농재보험 부담분을 계산하였다.

② 추계 결과

<표 35> 농재보험의 연간 요양급여비 추계 (단위 : 명, 원)

구분	1인당 요양급여비	발생 재해자수	요양급여비	농재보험요양급여비
사고성재해	3,709,771	21,840 ~ 291,200	810억 ~ 1조 803억	243억~3,241억
근골격계질환	4,814,375	115,358	5,554억	1,666억
계	8,524,146	137,198 ~ 406,558	6,364억 ~ 1조 7167억	1,909억~4,907억

- 연간 1,909~4,907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요양 급여외 기타 급여 지출 추계

① 추계 방식

-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재보험 급여도 산재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일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장애급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성격이 크므로, 농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현재의 산재보험 장애급여 수준의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전체 산재보험 급여 지출 중 요양급여와 장애급여를 뺀 액수를 한 해의 기타 급여액으로 추정하였고, 산재보험과 농재보험 가입자들이 장애급여를 제외한 기타 급여를 받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 급여액의 차이는 기준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노동자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농업인 1년 평균 소득 차이만큼 급여액을 감액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평균 소득은 전산업 임금노동자의 39.2% 수준).
- 70세 이상 고령자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타 사회보험 수급에 따른 공제액수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 노동부 자료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수급자는 1년에 10만 건으로 분석하였으나, 산재보험은 6개월 이상 요양자가 65%를 차지, 휴업급여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산재보험 급여별 지급액(2005년)

급여 종류	지급액(백만원)	백분율
요양급여	769,167	25.4%
휴업급여	938,439	31.0%
상병보상연금	140,345	4.6%
장해급여	922,185	30.5%
유족급여	220,577	7.3%
장의비	21,221	0.7%
간병급여	13,837	0.5%
계	3,025,771	100.0%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 2005.

② 추계 결과

- 연간 4,648억~1조 3,775억 원 정도의 기타 급여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7> 농재보험의 연간 기타 급여비 추계 (단위 : 원)

산재보험의 1인당 기타급여지출액	소득차이에 따른 감액 후 1인당 기타급여지출액	농업인 인구수를 적용한 기타급여지출액
1,194만	468만	4,648억~1조 3,775억

(3) 연간 급여 지출 추계 종합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간 총 6,557억~1조8,682억 원 정도의 급여 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8> 농재보험의 연간 급여비 추계(단위 : 원)

구분	농재보험요양급여비
요양 급여	1,909억~4,907억
기타 급여	4,648억~1조3,775억
총 계	6,557억~1조8,682억

급여지출추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사고성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미비
- 근골격계질환의 국내 발생을 자료의 미비로 미국의 발생률(OSHA Log)를 사용하여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중증질환자가 산재 신청을 함으로 요양급여가 높음. 농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요양급여가 대폭 낮을 수 있음. 또한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어느 정도 낮을 수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기간이 길어 휴업급여가 높음. 농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요양급여가 대폭 낮을 수 있음.

① 정부 보조에 따른 농업인 부담 보험료 변화

<표 39> 정부 보조에 따른 농업인 부담 보험료 변화

구분	총보험료	50% 보조	70% 보조	90% 보조
농업인 총부담금	6557억 ~ 1조8682억원	3279억 ~ 9342억원	1967억 ~ 5604억원	656억 ~ 1868억원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휴업급여 70%지급)	72,210 ~ 207,493원	36,104 ~ 103,747원	21,663 ~ 62,249원	7,221 ~ 20,749원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휴업급여 50%지급)	56,307 ~ 160,365원	28,153 ~ 80,182원	16,892 ~ 48,110원	5,631 ~ 16,037원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휴업급여 30%지급)	40,405 ~ 113,236원	20,202 ~ 56,618원	12,121 ~ 33,971원	4,041 ~ 11,324원
70세 이상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16,551 ~ 42,542원	8,275 ~ 21,271원	4,965 ~ 12,763원	1,655 ~ 4,254원

A. 총보험료를 농업인 자체 보험료로만 운영될 경우 농업인 1인당 보험료 부담액

- 농업인 총부담금 : 6557억 ~1조8682억원
- 휴업급여 7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72,210 ~ 207,493원
- 휴업급여 5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56,307 ~ 160,365원
- 휴업급여 3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40,405 ~ 113,236원
- 70세 이상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16,551 ~ 42,542원

B. 총보험료를 정부에서 50% 보조할 경우 농업인 1인당 보험료 부담액

- 농업인 총부담금 : 3279억 ~9342억원
- 휴업급여 7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36,104 ~

103,747원

- 휴업급여 5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28,153 ~ 80,182원
- 휴업급여 3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20,202 ~ 56,618원
- 70세 이상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8,275 ~ 21,271원

C. 총보험료를 정부에서 70% 보조할 경우 농업인 1인당 보험료 부담액

- 농업인 총부담금 : 1967억 ~ 5604억원
- 휴업급여 7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21,663 ~ 62,249원
- 휴업급여 5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16,892 ~ 48,110원
- 휴업급여 3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12,121 ~ 33,971원
- 70세 이상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4965 ~ 12,763원

D. 총보험료를 정부에서 90% 보조할 경우 농업인 1인당 보험료 부담액

- 농업인 총부담금 : 656억 ~ 1868억원
- 휴업급여 7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7,221 ~ 20,749원
- 휴업급여 5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5,631 ~ 16,037원
- 휴업급여 30%지급시 70세 미만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4,041 ~ 11,324원
- 70세 이상 농업세대주 1인당 평균 월부담금 : 1,655 ~ 4,254원

② 운영 비용 추계

농재보험의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산업재해 보험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행정비용을 바탕으로 농재보험 별도 운영기관의 연간 소요 행정비용을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다. 1인당 연간사업비용이 산재보험과 같은 38,597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1차 겸업 농가를 농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했을 때 연소요 행정비용은 약 740억원이다. 그러나 근로복지 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기에 실제 산재보험에만 소요되는 비용은 이보다 작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행정비용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일부 업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0> 농재보험 운영 기관 행정 비용 추정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¹⁾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농재보험 ²⁾
인원(명) ³⁾	10,459	3,220	1,241	4,461	-
1인당 인건비 (천원)	40,777	36,958	38,801		-
운영 비용 (천원) ⁴⁾	923,134,000	328,218,747	137,636,362	465,855,109	74,199,328
사업대상인원 (명)	47,278,951	12,069,599	12,069,599	12,069,599	1,922,392
대상 사업장 (가구)수	전국민	1,175,606개 사업장	1,175,606개 사업장		164,976호 농가
1인당 연사업비용(원)	19,525	27,194	11,404	38,597	38,597

- 1) 산재보험 + 고용보험
- 2) 1종 겸업농 기준 추정치
- 3) 2005년 각 기관 현원 기준
- 4) 각 기관 2005년 손익계산서 기준

농림부가 보험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 업무를 맡도록 하고 기타 보험 관련 업무는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요양 관리 및 진료비 심사 업무는 국민건

강심사평가원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농협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기능의 대부분을 위탁하면 직접운영보다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 농림부는 산하에 보험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독립된 부처를 설립하여 인정여부에 대한 관정의 역할(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농재 예방 및 농업인 교육 및 농업재해 통계분석 및 농재 관련 연구(산재보험에서 산업안전공단이 담당)만을 직접 운영한다면 운영경비는 220억 정도로 줄어든다.

<표 41> 일부업무 위탁시 농재보험 운영 기관 행정 비용 추정

	근로복지공단 ¹⁾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농재보험
운영 비용 (천원)	133,127	137,636,362	137,769,489	21,943,310
사업대상인원 (명)	12,069,599	12,069,599	12,069,599	1,922,392
1인당 연사업비용 (원)	11	11,404	11,415	11,415

1)산재심사업무비용, 근로복지공단 2005년 경영공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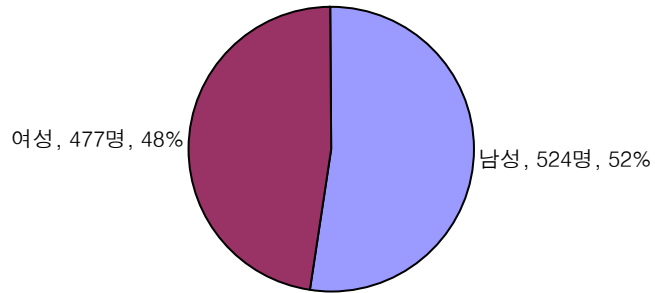
4. 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진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2007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1,001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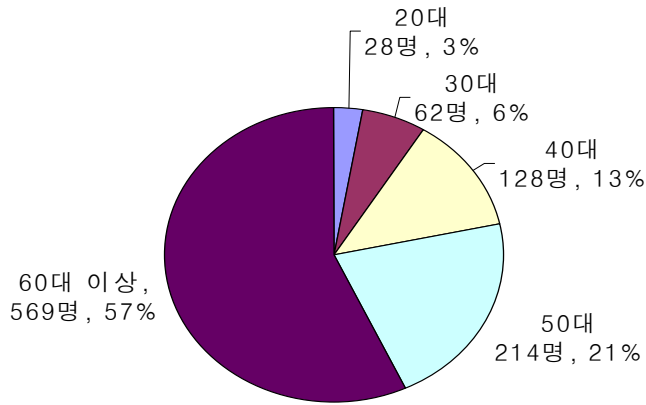
응답자는 성별 분포는 남성이 524명으로 52%였고, 여성이 477명으로 48%였다.

<그림 6> 응답자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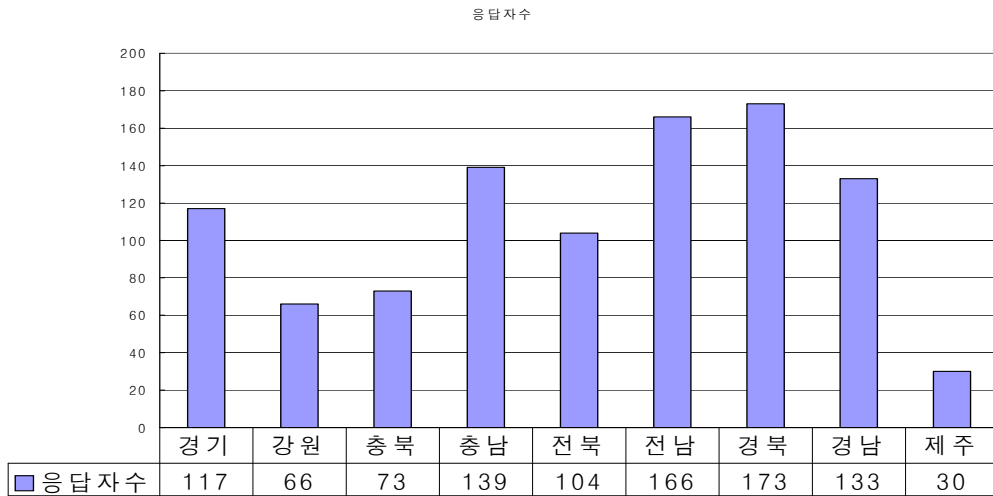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69명(57%)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응답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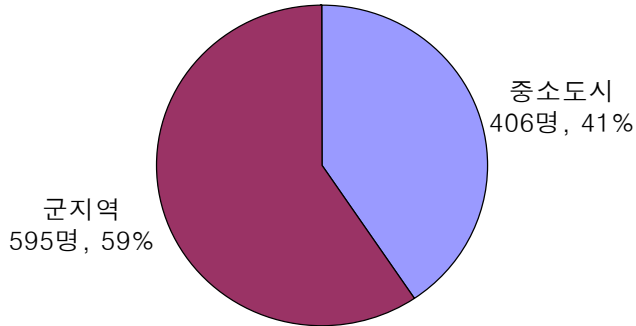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북이 173명(1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전남, 충남, 경남, 경기 순이었다.

<그림 8>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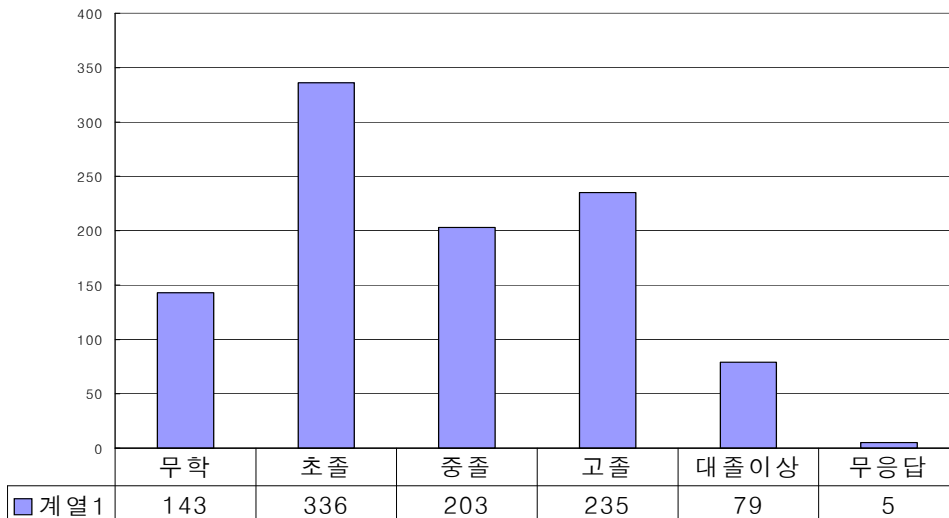
거주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406명이었고, 군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595명이었다.

<그림 9> 응답자의 거주지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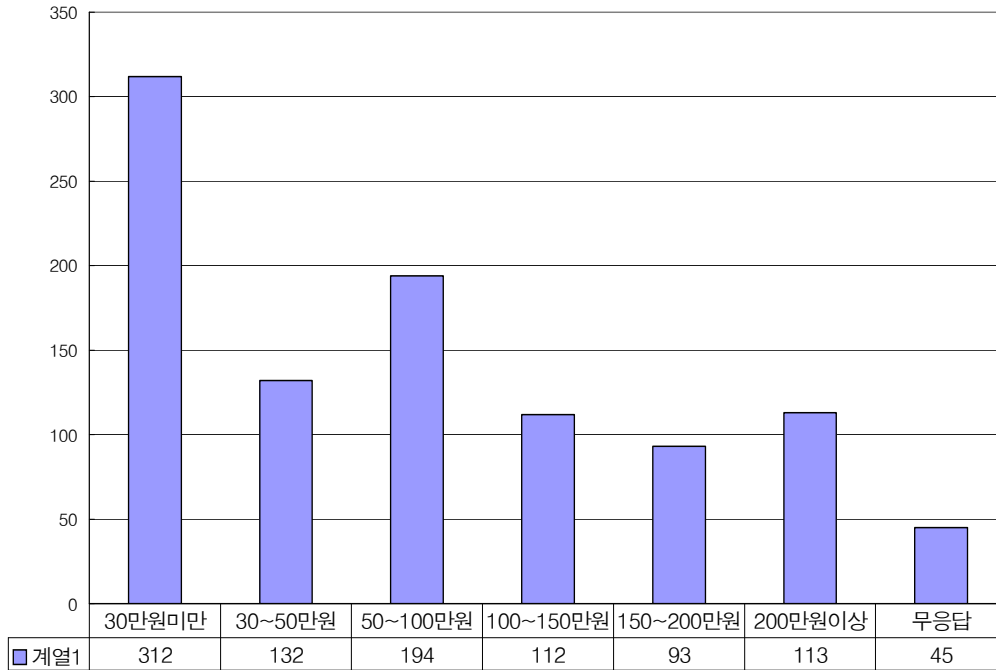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중졸 순이었다.

<그림 10>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소득별로는 월소득 30만원 미만인 이들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100만원, 30-50만원 수준이었다.

<그림 11> 응답자의 소득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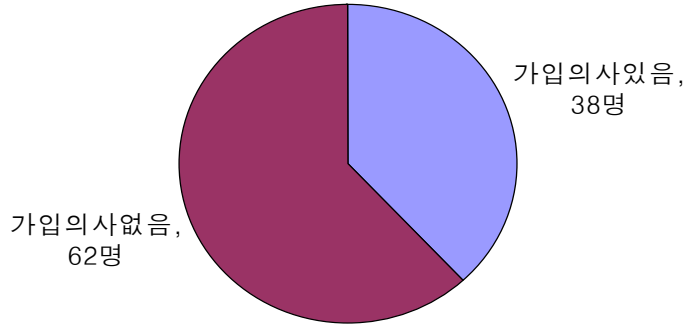
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농업인재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사를 확인하였다

“귀하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고 농업 관련 질병 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없도록 해주고, 병원 입원시 일당 지급, 장애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 농업인재해보험에의 자발적 가입 의사를 물었을 때, 62%가 가입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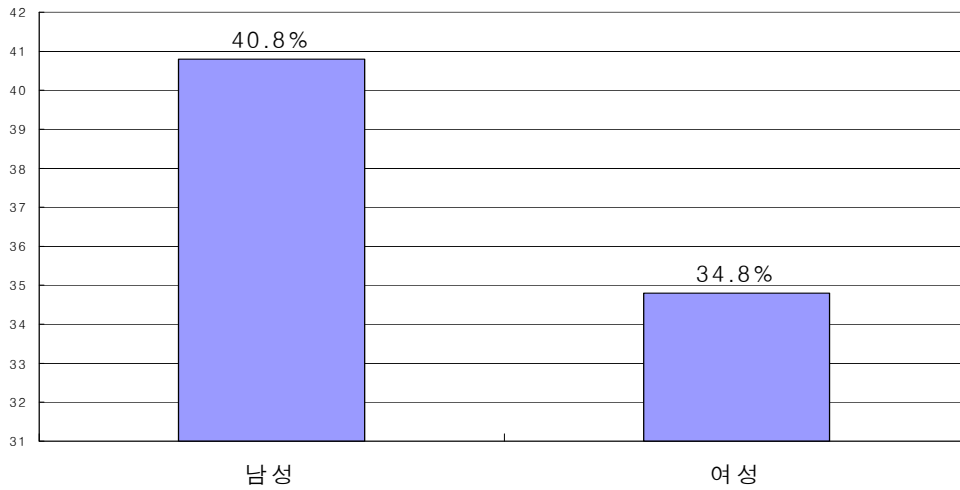
<그림 1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



3) 응답자의 특성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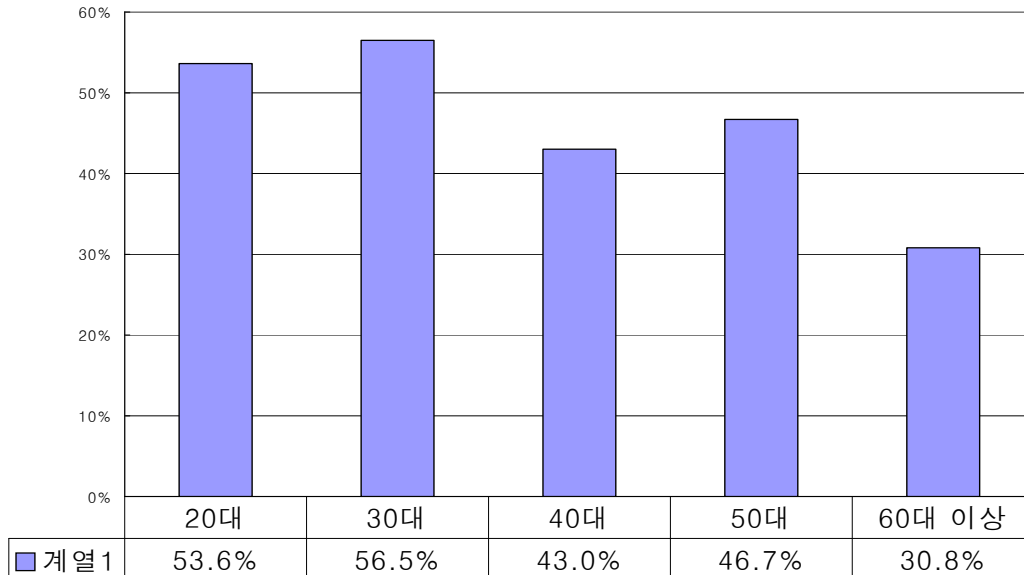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가입 의사 양성율을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가입 의사가 높았다.

<그림 13> 응답자의 성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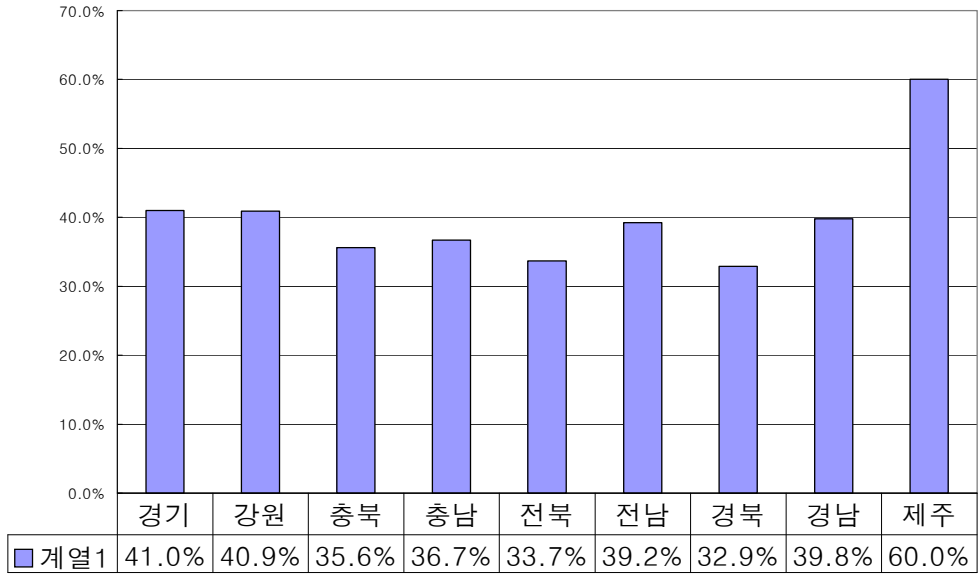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가입 의사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가입 의사가 가장 낮았다.

<그림 14> 응답자의 연령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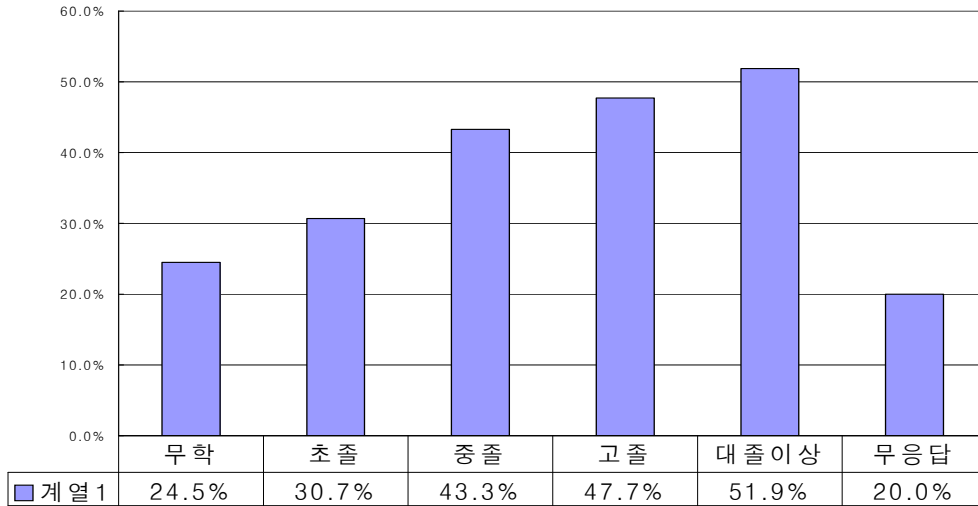
거주지별로 보면, 제주 지역 농업인들의 가입 의사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림 15> 응답자의 거주지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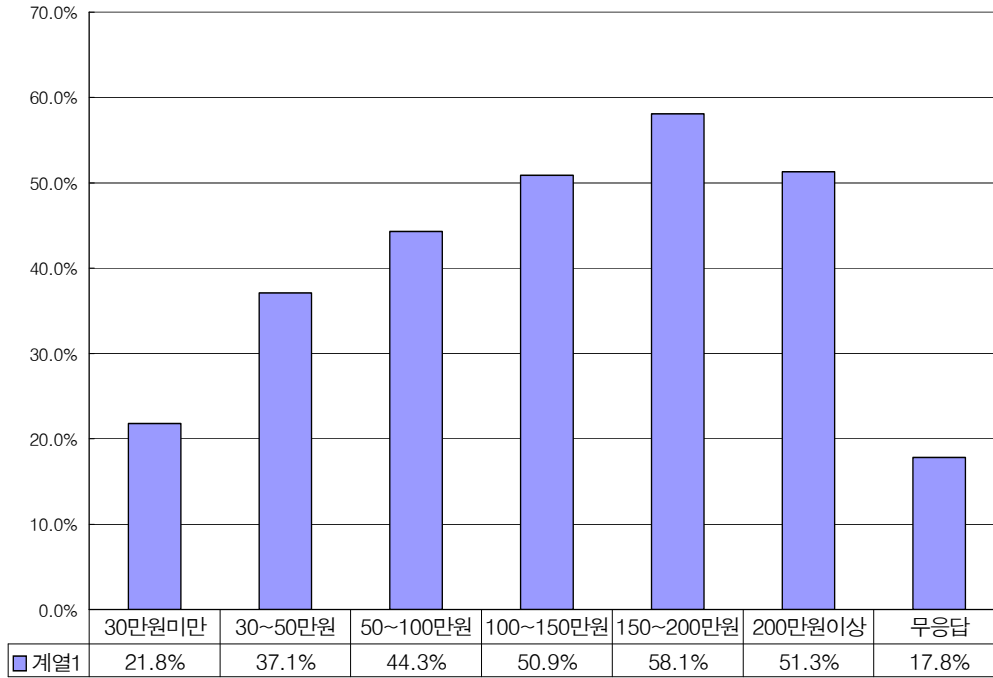
하력에 따른 양성율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응답자의 학력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소득 수준별 분포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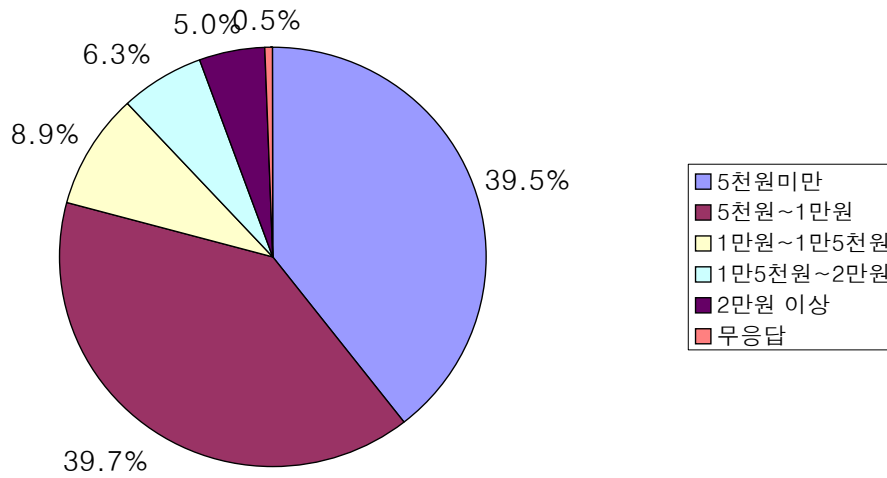
<그림 17> 응답자의 소득 수준별 가입 의사 양성율의 분포



4) 부담 가능한 보험료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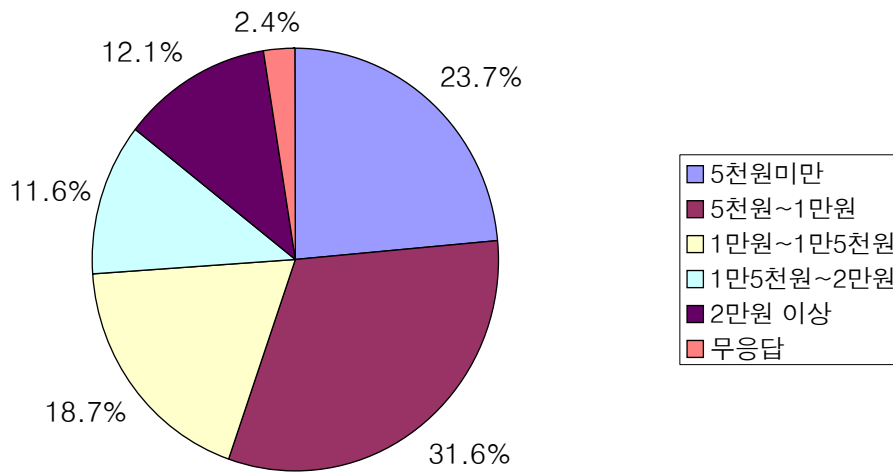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수준을 물었다. 그 결과 5천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59.9% 정도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8> 병원비 전액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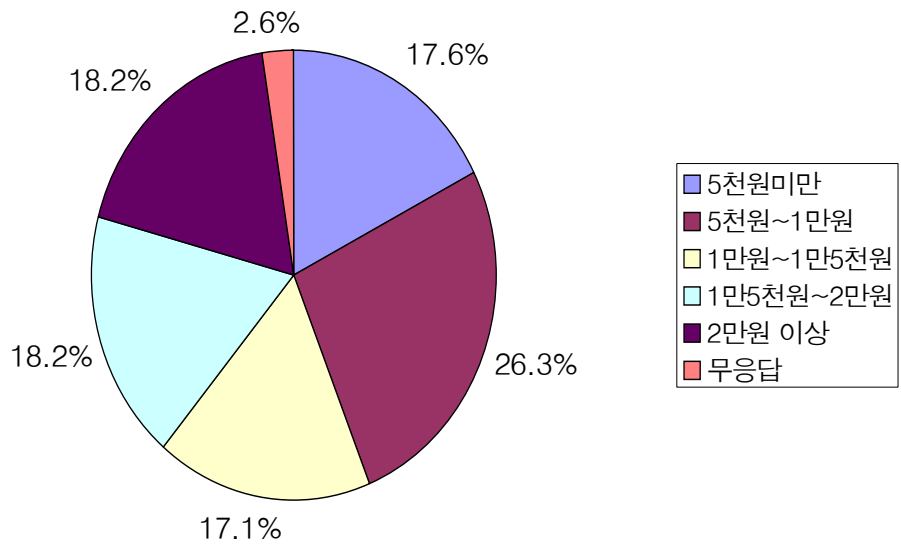
병원비 전액과 본인 수입의 3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물어보았을 때, 5천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74.0%, 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42.4%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 병원비 전액+휴업급여3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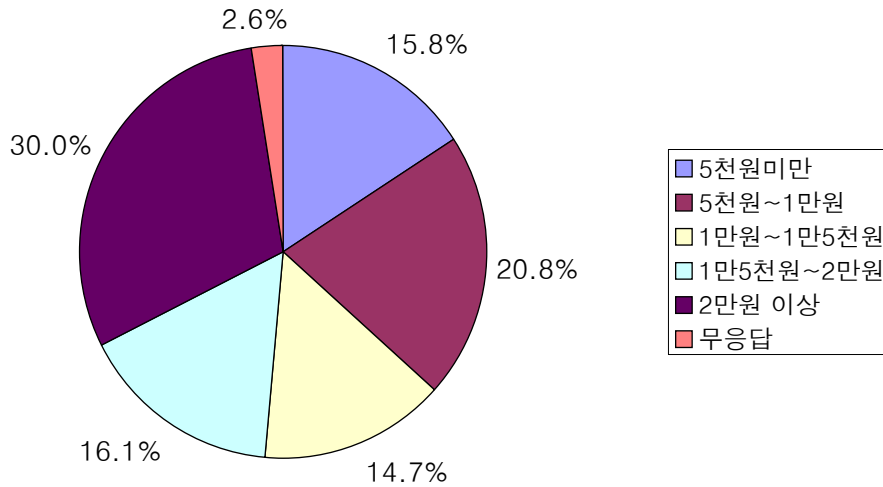
병원비 전액과 본인 수입의 5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물어보았을 때, 5천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79.8%, 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53.5%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 병원비 전액+휴업급여5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병원비 전액과 본인 수입의 7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물어보았을 때, 5천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81.6%, 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때 60.8%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병원비 전액+휴업급여70% 지급시 부담 가능 보험료



5) 가입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이유

가입 의사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이들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별도의 상해, 질병 보험을 들어서'라고 응답한 이들이 2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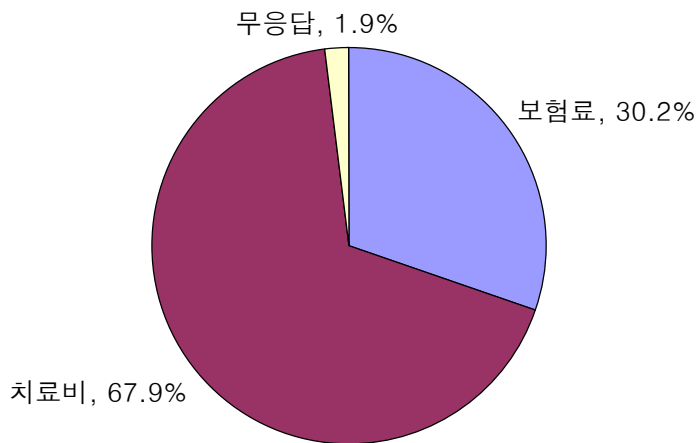
<표 42> 농업인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이유

구분	백분율(%)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	34.3
별도 일반보험 회사에 상해, 질병 보험을 들었다	22.1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했다	18.4
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	11.9
기타	8.6
없음/ 모름/ 무응답	4.8

6) 정부 지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농업인재해보험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응답에 67.8%가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림 22> 정부 지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7) 농업인재재보험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농업인재해보험 구성시 돈이 없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1인당 지원 금액이 적어져도 대상자수를 최대한 늘려 많은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63.8%가 대상자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농업인재해보험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구분	백분율
돈이 없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30.3%
1인당 지원 금액 적어져도 대상자수 최대한 늘려 많은 농민 지원	63.8%
잘 모름	5.9%

8) 농업인재해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급여 지급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급여부터 지급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54.9%가 병원 치료비라고 응답했고, 25.0%가 휴업 급여라고 응답했다.

<표 44> 보험 급여 우선순위

구분	백분율
병원 치료비	54.9%
병으로 인해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25.0%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긴 장애에 대한 보상	13.7%
장례비	2.7%
기타	0.2%
없음/ 모름/ 무응답	3.5%

9) 수용도 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도입될 농업인재해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의향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38%만 가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34.3%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했고, 40.5%가 농업인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른 보험을 들어서라

고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볼 때,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과 다른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현실 때문에, 별도의 농업인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가입 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미있는 재정 투입으로 보험료 부담 수준을 낮추고, 제도에 대한 홍보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 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지급 범위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사하였을 때, 다른 급여 지급 없이 요양급여만 전액 지급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60% 정도가 5천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1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요양급여 전액과 휴업급여를 소득의 30%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74%가 5천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1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42.4%로 늘었다. 요양급여 전액과 휴업급여를 소득의 50%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82.4%가 5천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1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53.5%로 과반수를 넘었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전액과 휴업급여를 소득의 70%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84.2%가 5천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고, 1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60.8%나 되었다. 이 때에는 2만 원 이상 부담하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30%나 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요양급여만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는 부담하고자 하는 보험료 수준이 낮았고 1만 원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업급여까지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료 부담 의지가 높아졌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월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보험료 지원보다는 급여비용 지출 자체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험료 경감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인들은 급여 지출 자체에 대한 보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급여가 더 집중되는 방식이 좋겠는가, 아니면 급여 수준이 좀 낮아지더라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64%가 적용대상자 확대가 더 좋은 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여 수준을 늘리기보다는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급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순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34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 수준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가 인구 감소 경향은 농업에 대한 거부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은 국가의 1차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정부는 농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는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농정 9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전업농 육성, 젊은 인재 양성,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친환경농업 확산, 과학영농, 품질고급화, 복지 확충, 농촌 개발 등이다.

종합대책 중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전체 아래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사회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체적 방향으로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경감, 농작업 상해공제보상 수준 확대, 농업인 재해보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작업 관련 재해 보상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낳고, 이러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업 관련 재해를 증가시키고 중증도 역시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그 규모와 심각도가 커져가고 있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농민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 그 부담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가고 있다. 노동자의 직업 관련 재해 문제를 산재보험이라는 형태로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직업 관련 재해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의 공공적 기능, 국가산업으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과 관련 없이도 농업은 재해 발생률이 높아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긴 하지만, 몇몇 통계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작업 관련 재해는 농기계 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각한 농업인 관련 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농작업 관련 재해 보상 체계는 산재보험과 농업인 재해 공제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14조, 15조에서 농업인 직업성질환과 사고에 관한 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제도는 다양한 급여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 수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법인 사업장의 농업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자영 농업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농업인 재해 공제 제도는 강제 가입 형태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이므로 전체 농업 인구의 33% 수준인 69만 명 정도만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농업인 재해 공제 제도는 정부의 재원 부담이 50%에 달하지만 사업연도 전에 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대다수 농업인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업인 재해 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재해의 범위가 협소하고 보상 수준이 낮아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 관련 재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을 넘어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재해 보상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산재보험에 농업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과 농업인 재해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은 제도의 운영 틀이 농업인 재해 보상 체계와 많이 달라, 이 체계 내에 자영 농업인의 재해 보상 체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업인 재해 공제 제도는 제도의 발전 가능성에 제약이 있어 포괄적이고 보장성이 높은 농업인 재해보상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재해보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만을 위한 독자적 사회보험 체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농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농업인 재해보상 제도를 사회적으로 해결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업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현재 농업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기존의 사회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은 현실에서, 새롭게 도입될 농업인재해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다수가 농업인의 건강 보장을 위해 국고를 투입해도 좋다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농업인의 처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선되었을 때, 도입될 농업인 재해보험 제도는 강제가입 형태로 모든 농업인을 그 가입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여건에 따라 가입 및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처음부터 많은 가입 및 적용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입 연령 제한도 70세까지로 높이고, 겸업농과 세대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는 최대한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현재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원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험 급여 체계는 산재보험 급여 체계를 원용하되, 요양 급여의 경우에는 산재보

험 요양 급여보다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서비스 전달 체계나 운영 체계는 최대한 현재의 타 사회보험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농업인 세대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농업인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제도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 급여로 지출되는 재정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만 정상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가정을 동원하여 이러한 농업인재해보험 제도의 1년 급여 지출 규모를 추정해 보면, 연간 총 6,557억 원에서 1조 8,682억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비용은 220억 원에서 7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운영을 위한 행정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급여 지출액의 6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154억 원에서 1조 1,949억 원 정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모델 설정상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액수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농업인의 제도 수용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아직까지 상당수의 농업인들에게 제도 수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인재해보험 제도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이들은 응답자의 38%에 불과했다.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이유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 현재 질병에 대한 민간보험이나 농업인 공제 제도 등 다른 보험이 어느

정도 농업인 재해 보상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장벽이 줄어들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경우 제도의 수용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요양급여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정 보험료 부담 수준이 월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요양급여와 더불어 휴업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상당수 되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형태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체 재정 지출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재정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에 포괄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 때 급여의 우선순위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재보험 재정의 추계와 농업인의 수용도 조사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농재보험도입 초기에는 보험재정의 6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의 자부담 보험료는 평균 5천원 정도로 하여 운영하며, 대상은 70세까지의 농업인과 1종 경업농을 포함하고, 급여의 수준은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 초기의 운영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가 더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재해 실태에 대한 근거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쉽지 않을뿐더러 제도의 설계도 쉽지 않다.

그리고 농업인의 정의와 대상자 파악 방식에 대한 논의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가 세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재해와 다른 농업인 재해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농업인 재해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업인 재해 요양자에 대한 재활 체계 구상 등도 추가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내에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가지고 선결 과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행정 단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참고 문헌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 2006.
- 김정호. 농업 부분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결과보고서 7. 2005
- 노동부, 산재, 고용보험 실무편람, 2006.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6.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6.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업인재해보험 발전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2006.
- 농림부. 농촌 복지·교육·산업 관련 업무 참고 자료. 농림부 농촌사회과. 2006
- 박대식, 마상진, 심재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박대식, 최경환. 농촌 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박시현, 이동필, 김용렬, 성주인, 신은정, 최경은, 전인우, 신봉호, 정용기, 이한성. 농촌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소. 2006.
-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박창규. 국민적 합의 속에 추진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이론과 실천. 2004년 2-3월 합본호. 2004.
- 송유철, 박지현, 임정빈, 김태곤, 임송수.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양승룡. 농업경영환경의 변화와 파생상품의 역할. 한국축산경영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2000;12.
- 이홍규. 농업인의 빈곤 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농협조사월보 제48권 제6호. 2003.
- 이희춘, 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농림부. 2003.

임상혁, 허용, 강태선, 권영준, 김은미, 김길중. 농작업 관련 위해요인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농촌생활연구소. 20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농업경제통계. 온라인간행물.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6.

한국산업안전공단. 농업안전작업지침서. 2005.

김귀남, 류소연, 박종, 이준행, 김기순. 일부 농촌지역주민의 비닐하우스 작업여부와 요통과의 관련성. 한국농촌의학회지. 1999;24(1):145-159.

김두희, 정철. 일부 농민들의 농업관련 질환 및 사고 한국농촌의학회지. 1998;23(1):39-48.

남택승, 김현광, 권오형, 이정자. 한국일부 농촌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역학적 고찰. 한국농촌의학회지. 1980; 5(1):16-27.

박순우. 일부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 실태. 한국농촌의학회지. 1997; 22(1):1-18.

박재범, 이경중, 이세휘, 김종구, 정호근.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농부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의학회지. 2000; 25(1): 11-21.

선명훈, 박인선, 조근열. 농촌지역 주민의 근골격계의 통증에 대한 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1991;16(1):40-47.

손명호, 신준호, 이면학, 문강, 손석준, 최진수, 김병우. 전라남도 농촌주민의 농기구 및 농기계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1993;18(2):121-130

윤희섭. 일부 농촌지역 손상 및 중독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9; 10(2):.467-479.

이경무, 민선영, 정문호. 농약살포 농민의 농약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의학회지. 2000;25(2):245-264

임경순. 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농약중독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농촌의학회지.

1997;22(1):35-41.

임현술. 농어민의 직업과 관련된 건강문제. 한국농촌의학회지. 제27권 제1호. 2002
장성훈, 이건설, 이원진. 충주지역 전업농민의 농부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의학회지.

1998; 23(1):15-26.

황의식, 강혜정.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2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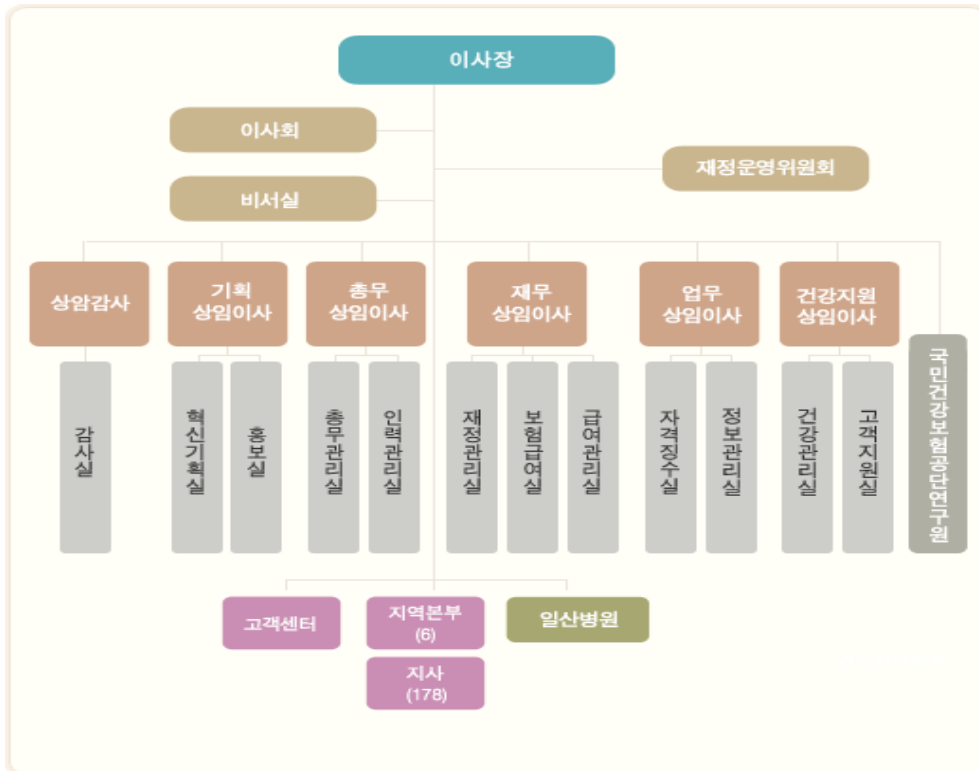
VI. 부록

1. 운영비 추계를 위한 제 조직규모

1) 건강보험공단

A. 조직현황

본부(1센터, 12실),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직영의료시설로 일산병원 운영 (2006.11.30 기준)



B. 정원 및 현원 현황 (각 연도말 현재 기준)

a. 정원

구분	합계	일반직	건강관리직	전산직	연구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2002	10,454	10,002		364	15	12	3	58
2003	10,454	9,276	875	209	21	12	3	58
2004	10,454	8,760	1,391	209	21	12	3	58
2005	10,454	8,249	1,902	209	21	12	3	58
2006	10,334	8,439	1,572	209	41	12	3	58

b. 현원

구분	합계	일반직	건강관리직	전산직	연구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2001	10,579	10,061	-	430	5	10	1	72
2002	10,580	10,131	-	361	16	11	1	60
2003	10,562	10,140	-	337	13	11	2	59
2004	10,495	8,818	1,384	208	14	10	2	59
2005	10,459	8,785	1,377	207	19	10	2	59
2006	10,416	8,546	1,570	207	22	10	2	59

○ 항목 설명 (직제규정 상 직렬구분)

- 일반직
 - 가. 일반관리직 : 건강관리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나. 건강관리직 : 건강증진 및 가입자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연구직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직원
- 전산직 : 전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기술직 : 전기, 기계, 건축 등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별정직 :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기타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
- 기능직 : 운전, 교환 등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근로복지공단

A. 조직현황

30이사, 감사, 2본부 8실국 24팀, 1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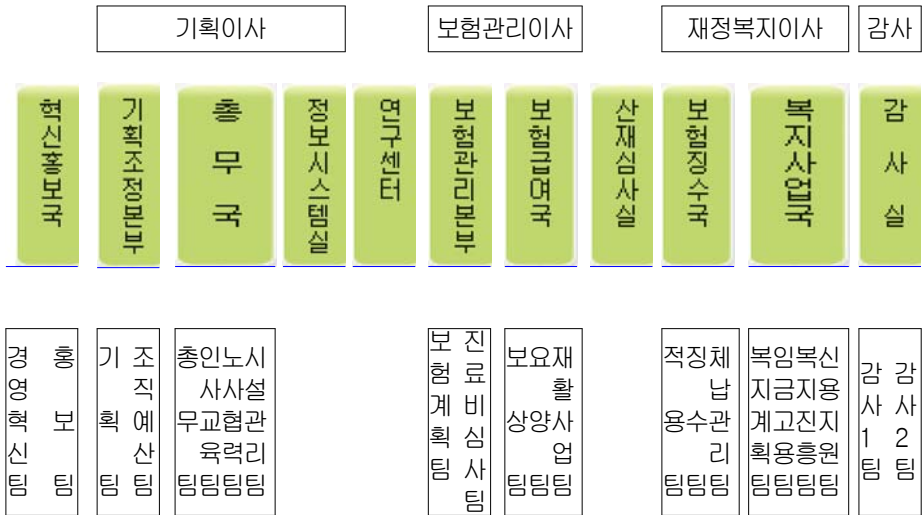


6지역본부, 43지사, 2재활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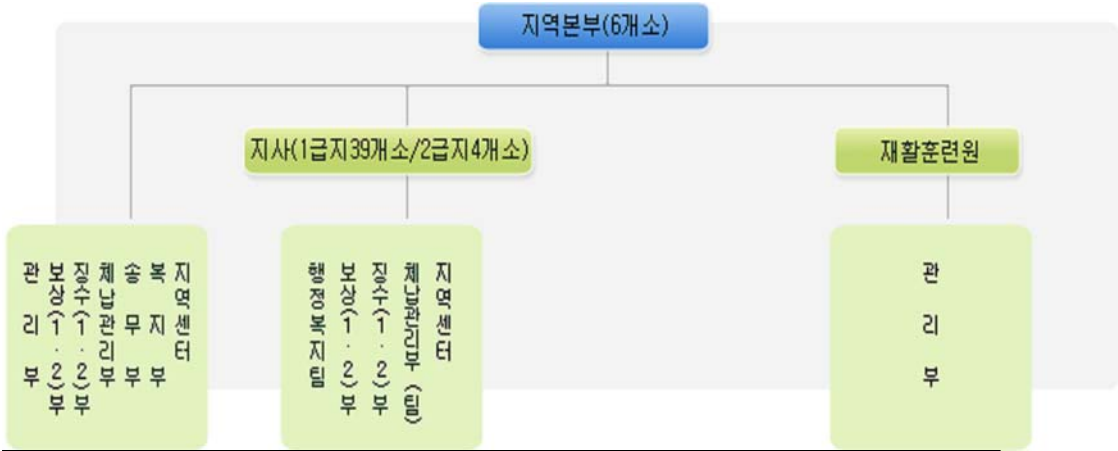


30이사, 감사, 2본부 8실국 24팀, 1연구센터

이사장



6지역본부, 43지사, 2재활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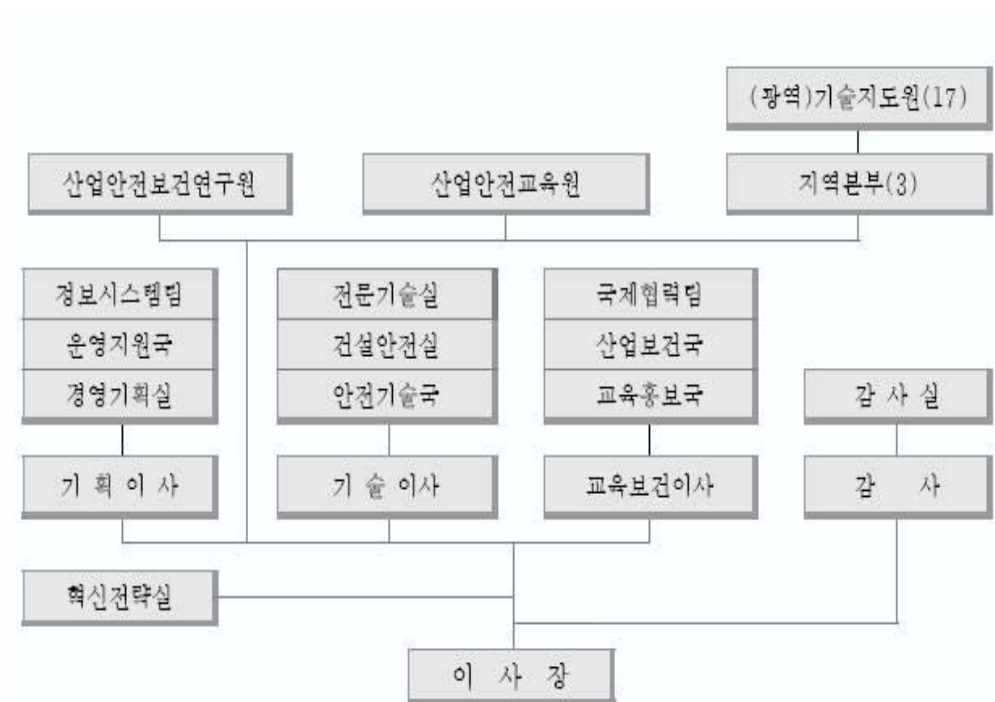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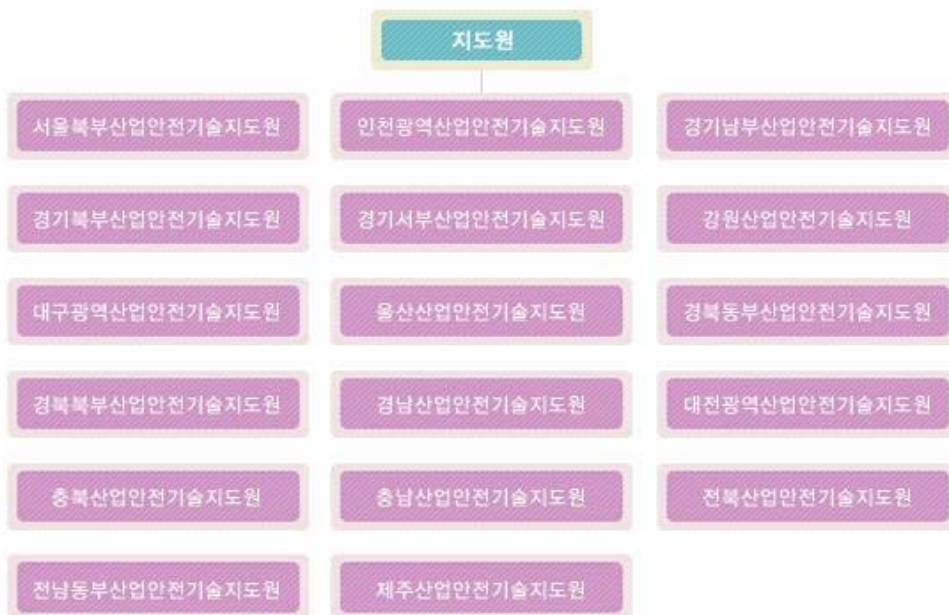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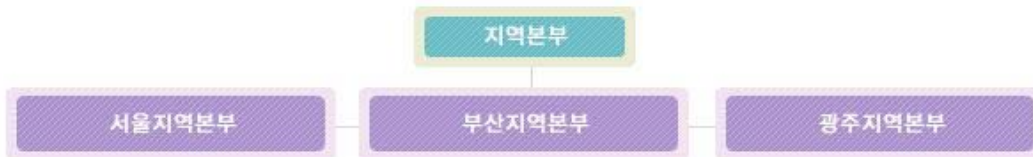
B. 인원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12	'06.10
정원	1,346	1,871	2,359	2,359	2,370	2,370	2,789	3,278	3,457
현원	1,192	1,797	2,237	2,293	2,354	2,320	2,777	3,220	3,411

③ 산업안전공단

A.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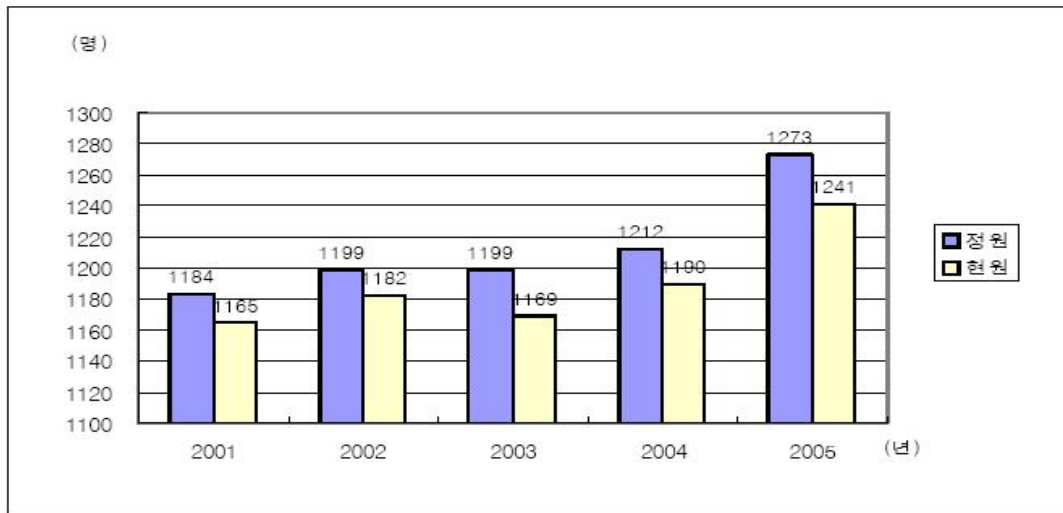


B. 인원현황 (2006년 4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임 원	별정직	일반직	사무직
정 원	1,319	5	5	1,132	177
현 원	1,229	5	5	1,061	158
과부족	△90	-	-	△71	△19

※ 전문 기술인력 현황 : 박사 47명(석사 350명), 전문의 6명, 기술사 305명, 기사 606명



2. 수용도 조사 질문지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ID			
☎	-	-	응답자이름	면접원이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농업인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 4
조사기관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대행 : 현대리서치

SQ1. 성별? (→ 음성으로 판단)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면접중단)

SQ3. 죄송하지만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만 세)

(→ 만19세 이하 면접중단)

① 20세~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문1. 귀하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하되, 농기계 사고 등 농업 관련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 농업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없도록 해 주고, 병원입원시 일당지급, 장애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가입 의향 있음(→ 1-1번 문항으로) ② 가입 의향 없음(→ 2번 문항으로)

문1-1. 귀하께서 농기계 사고 등 농업 관련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 농업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구분	5,000원 미만	5,000원~10,000원 미만	10,000원~15,000원 미만	15,000원~20,000원 미만	20,000원 이상
1-1. 병원비만 면제	①	②	③	④	⑤
1-2.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30% 지급	①	②	③	④	⑤
1-3.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50% 지급	①	②	③	④	⑤
1-4.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70% 지급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께서는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실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로 낼 돈이 없다 ② 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
 ③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했다 ④ 별도의 상해, 질병 보험을 들었다
 ⑤ 기타 _____

문3. 정부가 농민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귀하께서는 보험료와 치료비(병원비) 중 어느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 수용도 조사 결과 기초데이터

Confidential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귀중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Raw Table

2007년 4월

목 차

<응답자 특성>	1
문1. 귀하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고 농업 관련질병 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없도록 해주고, 병원입원 시 일당지급, 장에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
문1-1. 귀하께서 농업 관련질병, 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3
<1> 병원비만 면제	3
<2>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30%를 지급할 경우	4
<3>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50%를 지급할 경우	5
<4>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70%를 지급할 경우	6
문2. 귀하께서 새로운 보험제도에 가입하실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문3. 정부가 농민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문4. 정부의 재정이 한정 혹은 부족되어 다음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문5. 정부의 재정이 한정 혹은 부족되어 농업인 재해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데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 1순위	10
<2> 2순위	11
<3> 순위 종합	12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001)	100.0
성별		
남성	(524)	52.3
여성	(477)	47.7
연령		
20대	(28)	2.8
30대	(62)	6.2
40대	(128)	12.8
50대	(214)	21.4
60대 이상	(569)	56.8
지역		
기타	(117)	11.7
경기도	(66)	6.6
충청남도	(73)	7.3
충청북도	(139)	13.9
전라북도	(104)	10.4
전라남도	(166)	16.6
경상북도	(173)	17.3
경상남도	(133)	13.3
제주	(30)	3.0
지역규모		
중소도시	(406)	40.6
군지역	(595)	59.4
학력		
무학력	(143)	14.3
초졸	(336)	33.6
중졸	(203)	20.3
고졸	(235)	23.5
대졸 이상	(79)	7.9
무응답	(5)	.5
소득		
30만원 미만	(312)	31.2
30만원~50만원 미만	(132)	13.2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19.4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11.2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9.3
200만원 이상	(113)	11.3
무응답	(45)	4.5
건강보험 가입의향		
가입의향이 있음	(380)	38.0
가입의향이 없음	(621)	62.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Q1. 귀하가 건강보험과 별다른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고 농업 관련 질병 주,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농약에 걸렸을 때,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없도록 해주고, 병원원인조사 일당지급, 장애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례수	가입 의향 있음	가입 의향 없음	계
전체	(1001)	38.0	62.0	100.0
성별				
남성	(524)	40.8	59.2	100.0
여성	(477)	34.8	65.2	100.0
연령				
20대	(28)	53.6	46.4	100.0
30대	(62)	56.5	43.5	100.0
40대	(128)	43.0	57.0	100.0
50대	(214)	46.7	53.3	100.0
60대 이상	(569)	30.8	69.2	100.0
지역				
전국	(117)	41.0	59.0	100.0
경기도	(66)	40.9	59.1	100.0
충청도	(73)	35.6	64.4	100.0
전라도	(139)	36.7	63.3	100.0
제주도	(104)	33.7	66.3	100.0
경상도	(166)	39.2	60.8	100.0
강원도	(173)	32.9	67.1	100.0
제주도	(133)	39.8	60.2	100.0
제주도	(30)	60.0	40.0	100.0
지역규모				
중소도시	(406)	37.7	62.3	100.0
대도시	(595)	38.2	61.8	100.0
학력				
초·중·고졸	(143)	24.5	75.5	100.0
대졸	(336)	30.7	69.3	100.0
대학원졸	(203)	43.3	56.7	100.0
그외	(235)	47.7	52.3	100.0
대졸 이상	(79)	51.9	48.1	100.0
무응답	(5)	20.0	80.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312)	21.8	78.2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132)	37.1	62.9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44.3	55.7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50.9	49.1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58.1	41.9	100.0
200만원 이상	(113)	51.3	48.7	100.0
무응답	(45)	17.8	82.2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가입의향이 있음	(380)	100.0	.0	100.0
가입의향이 없음	(621)	.0	100.0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 1-1. 귀하께서 농업 관련 질병,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병원비만 면제

	사례수	5000원 미만	5000원~ 10000원 미만	10000원~ 15000원 미만	15000원~ 20000원 미만	20000원 이상	무응답	계
전체	(380)	39.5	39.7	8.9	6.3	5.0	.5	100.0
성별								
남성	(214)	38.3	41.1	9.8	6.5	4.2	.0	100.0
여성	(166)	41.0	38.0	7.8	6.0	6.0	1.2	100.0
연령								
20대	(15)	20.0	40.0	26.7	13.3	.0	.0	100.0
30대	(35)	34.3	42.9	14.3	2.9	5.7	.0	100.0
40대	(55)	34.5	45.5	9.1	7.3	3.6	.0	100.0
50대	(100)	38.0	40.0	7.0	9.0	5.0	1.0	100.0
60대 이상	(175)	44.6	37.1	7.4	4.6	5.7	.6	100.0
지역								
전국	(48)	35.4	47.9	6.3	4.2	6.3	.0	100.0
충청	(27)	25.9	44.4	14.8	11.1	3.7	.0	100.0
경남	(26)	34.6	50.0	3.8	.0	11.5	.0	100.0
충남	(51)	49.0	33.3	9.8	3.9	3.9	.0	100.0
전북	(35)	45.7	37.1	8.6	2.9	2.9	2.9	100.0
경북	(65)	47.7	29.2	10.8	4.6	7.7	.0	100.0
강원	(57)	33.3	42.1	8.8	10.5	3.5	1.8	100.0
제주	(53)	34.0	45.3	7.5	9.4	3.8	.0	100.0
제주	(18)	44.4	33.3	11.1	11.1	.0	.0	100.0
지역규모								
중소도시	(153)	36.6	44.4	7.2	4.6	5.9	1.3	100.0
근지역	(227)	41.4	36.6	10.1	7.5	4.4	.0	100.0
학력								
무응답	(35)	48.6	40.0	5.7	5.7	.0	.0	100.0
초·중·고졸	(103)	47.6	35.0	1.9	5.8	8.7	1.0	100.0
대졸	(88)	42.0	42.0	10.2	3.4	1.1	1.1	100.0
대졸 이상	(112)	32.1	40.2	15.2	7.1	5.4	.0	100.0
무응답	(41)	26.8	46.3	7.3	12.2	7.3	.0	100.0
무응답	(1)	.0	.0	100.0	.0	.0	.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68)	39.7	41.2	10.3	2.9	5.9	.0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49)	55.1	22.4	10.2	8.2	4.1	.0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86)	47.7	39.5	5.8	3.5	3.5	.0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57)	31.6	43.9	10.5	5.3	7.0	1.8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54)	35.2	42.6	11.1	9.3	1.9	.0	100.0
200만원 이상	(58)	29.3	44.8	3.4	12.1	8.6	1.7	100.0
무응답	(8)	12.5	50.0	37.5	.0	.0	.0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있음	(380)	39.5	39.7	8.9	6.3	5.0	.5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 1-1. 귀하께서 농업 관련 질병, 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 >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30%를 지급할 경우

	사례수	5000원 미만	5000원~100000원 미만	100000원~150000원 미만	150000원~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무응답	계
전체	(380)	23.7	31.6	18.7	11.6	12.1	2.4	100.0
성별								
남성	(214)	22.0	35.5	20.1	11.2	9.8	1.4	100.0
여성	(166)	25.9	26.5	16.9	12.0	15.1	3.6	100.0
연령								
20대	(15)	6.7	26.7	26.7	20.0	20.0	.0	100.0
30대	(35)	8.6	28.6	28.6	20.0	11.4	2.9	100.0
40대	(55)	21.8	30.9	20.0	9.1	18.2	.0	100.0
50대	(100)	22.0	33.0	19.0	12.0	11.0	3.0	100.0
60대 이상	(175)	29.7	32.0	15.4	9.7	10.3	2.9	100.0
지역								
전국	(48)	29.2	20.8	20.8	10.4	18.8	.0	100.0
경기도	(27)	22.2	33.3	14.8	14.8	11.1	3.7	100.0
충청도	(26)	11.5	50.0	11.5	3.8	19.2	3.8	100.0
전라도	(51)	35.3	33.3	21.6	3.9	5.9	.0	100.0
제주도	(35)	20.0	34.3	17.1	11.4	14.3	2.9	100.0
경상도	(65)	29.2	29.2	13.8	10.8	13.8	3.1	100.0
충남도	(57)	17.5	38.6	21.1	12.3	8.8	1.8	100.0
경북도	(53)	20.8	22.6	20.8	22.6	7.5	5.7	100.0
울산광역시	(18)	11.1	33.3	27.8	11.1	16.7	.0	100.0
지역구분								
시	(153)	23.5	32.0	17.6	13.1	11.1	2.6	100.0
군	(227)	23.8	31.3	19.4	10.6	12.8	2.2	100.0
학력								
초등학교	(35)	45.7	25.7	11.4	5.7	8.6	2.9	100.0
중학교	(103)	29.1	36.9	7.8	10.7	11.7	3.9	100.0
고등학교	(88)	23.9	33.0	26.1	4.5	8.0	4.5	100.0
대학교 이상	(112)	14.3	29.5	24.1	17.0	15.2	.0	100.0
무응답	(41)	17.1	26.8	19.5	19.5	17.1	.0	100.0
무응답	(1)	.0	.0	100.0	.0	.0	.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68)	29.4	35.3	17.6	10.3	5.9	1.5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49)	44.9	20.4	14.3	12.2	6.1	2.0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86)	24.4	37.2	16.3	7.0	12.8	2.3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57)	21.1	26.3	21.1	12.3	15.8	3.5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54)	14.8	33.3	22.2	20.4	9.3	.0	100.0
200만원 이상	(58)	10.3	34.5	17.2	12.1	22.4	3.4	100.0
무응답	(8)	12.5	12.5	50.0	.0	12.5	12.5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있음	(380)	23.7	31.6	18.7	11.6	12.1	2.4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 1-1. 귀하께서 농업 관련 질병,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3>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50%를 지급할 경우

	사례수	5000원 미만	5000원~10000원 미만	10000원~15000원 미만	15000원~20000원 미만	20000원 이상	무응답	계
전체	(380)	17.6	26.3	17.1	18.2	18.2	2.6	100.0
성별								
남성	(214)	15.0	28.0	19.2	19.6	15.9	2.3	100.0
여성	(166)	21.1	24.1	14.5	16.3	21.1	3.0	100.0
연령								
20대	(15)	6.7	20.0	13.3	26.7	33.3	.0	100.0
30대	(35)	2.9	25.7	25.7	22.9	20.0	2.9	100.0
40대	(55)	16.4	25.5	16.4	21.8	20.0	.0	100.0
50대	(100)	18.0	26.0	16.0	19.0	18.0	3.0	100.0
60대 이상	(175)	21.7	27.4	16.6	14.9	16.0	3.4	100.0
지역								
전국	(48)	20.8	20.8	12.5	20.8	22.9	2.1	100.0
수도권	(27)	11.1	33.3	11.1	22.2	14.8	7.4	100.0
충청	(26)	11.5	34.6	15.4	7.7	26.9	3.8	100.0
전라	(51)	29.4	27.5	23.5	13.7	5.9	.0	100.0
경상	(35)	17.1	25.7	14.3	14.3	25.7	2.9	100.0
호남	(65)	18.5	26.2	16.9	15.4	20.0	3.1	100.0
제주	(57)	14.0	28.1	19.3	22.8	15.8	.0	100.0
수출	(53)	15.1	20.8	17.0	26.4	15.1	5.7	100.0
수입	(18)	11.1	27.8	22.2	11.1	27.8	.0	100.0
지역규모								
수도권	(153)	16.3	25.5	19.6	18.3	17.0	3.3	100.0
수도권외	(227)	18.5	26.9	15.4	18.1	18.9	2.2	100.0
현직직종								
농업	(35)	40.0	17.1	14.3	14.3	11.4	2.9	100.0
비농업	(103)	21.4	35.9	11.7	9.7	17.5	3.9	100.0
농업관련	(88)	15.9	28.4	20.5	19.3	11.4	4.5	100.0
비농업관련	(112)	13.4	22.3	15.2	25.9	22.3	.9	100.0
대기업	(41)	4.9	17.1	29.3	19.5	29.3	.0	100.0
중소기업	(1)	.0	.0	100.0	.0	.0	.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68)	23.5	32.4	13.2	17.6	10.3	2.9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49)	38.8	18.4	12.2	16.3	12.2	2.0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86)	17.4	33.7	19.8	11.6	15.1	2.3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57)	19.3	14.0	15.8	21.1	26.3	3.5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54)	3.7	37.0	14.8	27.8	16.7	.0	100.0
200만원 이상	(58)	6.9	17.2	24.1	19.0	31.0	1.7	100.0
무응답	(8)	.0	25.0	25.0	12.5	12.5	25.0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있음	(380)	17.6	26.3	17.1	18.2	18.2	2.6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1-1. 귀하께서 농업 관련 질병, 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관절염 등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4> 병원비 면제와 본인수입의 70%를 지급할 경우

	사례수	5000원 미만	5000원~ 10000원 미만	10000원~ 15000원 미만	15000원~ 20000원 미만	20000원 이상	무응답	계
전체	(380)	15.8	20.8	14.7	16.1	30.0	2.6	100.0
성별								
여성	(214)	13.6	19.6	16.4	15.0	33.2	2.3	100.0
여성	(166)	18.7	22.3	12.7	17.5	25.9	3.0	100.0
연령								
20대	(15)	6.7	13.3	13.3	13.3	53.3	.0	100.0
30대	(35)	2.9	14.3	22.9	25.7	31.4	2.9	100.0
40대	(55)	16.4	20.0	9.1	21.8	32.7	.0	100.0
50대	(100)	15.0	23.0	13.0	14.0	32.0	3.0	100.0
60대 이상	(175)	19.4	21.7	16.0	13.7	25.7	3.4	100.0
지역								
경기	(48)	18.8	16.7	8.3	10.4	43.8	2.1	100.0
경남	(27)	11.1	25.9	14.8	18.5	22.2	7.4	100.0
충남	(26)	11.5	30.8	7.7	11.5	34.6	3.8	100.0
충북	(51)	27.5	27.5	11.8	15.7	17.6	.0	100.0
충청	(35)	14.3	17.1	20.0	8.6	37.1	2.9	100.0
전남	(65)	13.8	20.0	24.6	13.8	24.6	3.1	100.0
전북	(57)	12.3	21.1	10.5	29.8	26.3	.0	100.0
제주	(53)	15.1	15.1	17.0	15.1	32.1	5.7	100.0
제주	(18)	11.1	16.7	11.1	16.7	44.4	.0	100.0
지역규모								
시	(153)	14.4	20.3	11.8	17.6	32.7	3.3	100.0
읍	(227)	16.7	21.1	16.7	15.0	28.2	2.2	100.0
현								
무안	(35)	37.1	20.0	14.3	11.4	14.3	2.9	100.0
곡성	(103)	18.4	29.1	11.7	11.7	25.2	3.9	100.0
고성	(88)	13.6	22.7	19.3	18.2	21.6	4.5	100.0
담양	(12)	12.5	16.1	11.6	19.6	39.3	.9	100.0
대안	(41)	4.9	9.8	19.5	17.1	48.8	.0	100.0
무응답	(1)	.0	.0	100.0	.0	.0	.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68)	23.5	27.9	11.8	13.2	20.6	2.9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49)	32.7	14.3	20.4	12.2	18.4	2.0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86)	16.3	27.9	16.3	18.6	18.6	2.3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57)	17.5	10.5	8.8	17.5	42.1	3.5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54)	1.9	27.8	14.8	16.7	38.9	.0	100.0
200만원 이상	(58)	5.2	10.3	15.5	17.2	50.0	1.7	100.0
무응답	(8)	.0	25.0	25.0	12.5	12.5	25.0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있음	(380)	15.8	20.8	14.7	16.1	30.0	2.6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2. 귀하께서 새로운 보험제도에 가입하실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	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	농업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했다	별도 보험 회사에 가입 했다	보험이 필요없다	나이가 많다	믿을수가 없다	보험 혜택이 적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이다	기타 모름/ 무응답	없음/ 계	계
전체	(621)	34.3	11.9	18.4	22.1	2.1	3.1	1.0	.8	1.0	.6	4.8	100.0
성별													
여성	(310)	31.3	12.3	21.6	20.3	1.9	3.5	1.0	.3	1.0	1.3	5.5	100.0
여성	(311)	37.3	11.6	15.1	23.8	2.3	2.6	1.0	1.3	1.0	.0	4.2	100.0
연령													
20대	(13)	23.1	15.4	15.4	46.2	.0	.0	.0	.0	.0	.0	.0	100.0
30대	(27)	14.8	11.1	7.4	44.4	7.4	.0	3.7	3.7	.0	.0	7.4	100.0
40대	(73)	27.4	13.7	23.3	34.2	1.4	.0	.0	.0	.0	.0	.0	100.0
50대	(114)	28.9	17.5	17.5	27.2	2.6	.0	2.6	.9	.0	.0	2.6	100.0
60대 이상	(394)	38.8	9.9	18.5	16.0	1.8	4.8	.5	.8	1.5	1.0	6.3	100.0
지역													
전국	(69)	24.6	7.2	27.5	21.7	4.3	5.8	.0	.0	.0	4.3	4.3	100.0
수도권	(39)	43.6	12.8	12.8	12.8	5.1	2.6	2.6	2.6	2.6	.0	2.6	100.0
충청	(47)	36.2	12.8	8.5	31.9	.0	.0	2.1	.0	2.1	.0	6.4	100.0
전라	(88)	29.5	12.5	20.5	27.3	1.1	2.3	.0	.0	1.1	.0	5.7	100.0
경상	(69)	42.0	15.9	7.2	20.3	2.9	4.3	.0	1.4	.0	.0	5.8	100.0
호남	(101)	38.6	5.0	24.8	19.8	2.0	3.0	.0	1.0	1.0	.0	5.0	100.0
제주	(16)	32.8	19.8	16.4	20.7	1.7	3.4	1.7	.9	.9	.0	1.7	100.0
수도권	(80)	33.8	7.5	21.3	22.5	1.3	2.5	1.3	1.3	.0	1.3	7.5	100.0
수도권	(12)	25.0	16.7	16.7	16.7	.0	.0	8.3	.0	8.3	.0	8.3	100.0
지역규모													
시	(253)	33.6	15.4	18.2	17.8	2.0	4.0	1.2	1.2	.8	1.6	4.3	100.0
읍	(368)	34.8	9.5	18.5	25.0	2.2	2.4	.8	.5	1.1	.0	5.2	100.0
학력													
초	(108)	51.9	4.6	17.6	9.3	2.8	3.7	.0	1.9	2.8	.0	5.6	100.0
중	(233)	37.8	12.9	15.0	21.5	.9	4.7	.0	.4	.9	.9	5.2	100.0
고	(115)	20.0	13.0	28.7	24.3	2.6	.9	2.6	.0	.9	.0	7.0	100.0
대 이상	(123)	30.1	14.6	18.7	28.5	3.3	2.4	.8	.8	.0	.8	.0	100.0
대 이상	(38)	23.7	15.8	10.5	36.8	2.6	.0	2.6	2.6	.0	2.6	2.6	100.0
무응답	(4)	.0	.0	.0	.0	.0	.0	25.0	.0	.0	.0	75.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244)	44.7	11.5	14.3	16.4	2.0	4.5	.0	.8	.8	.4	4.5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83)	32.5	16.9	15.7	20.5	1.2	4.8	1.2	1.2	1.2	1.2	3.6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08)	28.7	11.1	26.9	20.4	1.9	2.8	1.9	.9	.9	.0	4.6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55)	32.7	14.5	18.2	23.6	1.8	1.8	1.8	.0	1.8	.0	3.6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39)	20.5	10.3	28.2	38.5	.0	.0	.0	.0	.0	.0	2.6	100.0
200만원 이상	(55)	14.5	9.1	21.8	40.0	5.5	.0	1.8	1.8	.0	3.6	1.8	100.0
무응답	(37)	32.4	8.1	10.8	21.6	2.7	.0	2.7	.0	2.7	.0	18.9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없음	(621)	34.3	11.9	18.4	22.1	2.1	3.1	1.0	.8	1.0	.6	4.8	100.0

문3. 정부기 농민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보험료	치료비 (병원비)	무응답	계
전체	(1001)	30.2	67.9	1.9	100.0
성별					
여성	(524)	34.0	64.3	1.7	100.0
남성	(477)	26.0	71.9	2.1	100.0
연령					
20대	(28)	32.1	67.9	.0	100.0
30대	(62)	30.6	67.7	1.6	100.0
40대	(128)	31.3	68.8	.0	100.0
50대	(214)	26.2	71.5	2.3	100.0
60대 이상	(569)	31.3	66.4	2.3	100.0
지역					
전국	(117)	27.4	67.5	5.1	100.0
경기도	(66)	27.3	72.7	.0	100.0
충청도	(73)	37.0	63.0	.0	100.0
전라도	(139)	30.2	67.6	2.2	100.0
호남도	(104)	33.7	65.4	1.0	100.0
제주도	(166)	32.5	65.7	1.8	100.0
광역시	(173)	27.2	71.1	1.7	100.0
광역시	(133)	27.8	70.7	1.5	100.0
광역시	(30)	33.3	63.3	3.3	100.0
지역구분					
도시	(406)	32.0	65.3	2.7	100.0
시외	(595)	28.9	69.7	1.3	100.0
연령구분					
10대	(143)	32.2	65.7	2.1	100.0
20대	(336)	26.8	71.4	1.8	100.0
30대	(203)	34.0	62.6	3.4	100.0
40대	(235)	28.9	70.6	.4	100.0
50대 이상	(79)	35.4	64.6	.0	100.0
무응답	(5)	20.0	40.0	40.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312)	28.8	68.6	2.6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132)	19.7	79.5	.8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35.1	64.4	.5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30.4	68.8	.9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26.9	69.9	3.2	100.0
200만원 이상	(113)	37.2	62.8	.0	100.0
무응답	(45)	37.8	51.1	11.1	100.0
건강상태					
건강	(380)	26.8	72.4	.8	100.0
약간이상	(621)	32.2	65.2	2.6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4. 정부의 재정이 한정 혹은 부족되어 다음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돈이 없는데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늘어 가도록 지원	1인당 지원액 적어져 대상자 최대 늘려 많은 지원	잘 모름	계
전체	(1001)	30.3	63.8	5.9	100.0
성별					
남성	(524)	31.1	64.5	4.4	100.0
여성	(477)	29.4	63.1	7.5	100.0
연령					
20대	(28)	39.3	60.7	.0	100.0
30대	(62)	27.4	72.6	.0	100.0
40대	(128)	35.2	61.7	3.1	100.0
50대	(214)	26.6	67.8	5.6	100.0
60대 이상	(569)	30.4	62.0	7.6	100.0
지역					
전국	(117)	32.5	66.7	.9	100.0
충청권	(66)	27.3	69.7	3.0	100.0
호남권	(73)	32.9	64.4	2.7	100.0
영남권	(139)	28.8	58.3	12.9	100.0
제주권	(104)	28.8	66.3	4.8	100.0
수도권	(166)	28.3	68.1	3.6	100.0
수도권 외	(173)	31.2	60.7	8.1	100.0
수도권 외	(133)	30.1	61.7	8.3	100.0
수도권 외	(30)	40.0	60.0	.0	100.0
지역 규모					
중소도시	(406)	31.3	63.1	5.7	100.0
대도시	(595)	29.6	64.4	6.1	100.0
학력					
무무학력	(143)	30.1	56.6	13.3	100.0
초졸	(336)	26.8	65.5	7.7	100.0
중졸	(203)	30.5	65.5	3.9	100.0
고졸	(235)	36.2	62.6	1.3	100.0
대졸 이상	(79)	27.8	69.6	2.5	100.0
무학력	(5)	20.0	60.0	20.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312)	32.7	58.0	9.3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132)	30.3	65.2	4.5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24.7	69.1	6.2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25.9	69.6	4.5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36.6	63.4	.0	100.0
200만원 이상	(113)	36.3	63.7	.0	100.0
무학력	(45)	20.0	64.4	15.6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가입의향 있음	(380)	29.2	68.4	2.4	100.0
가입의향 없음	(621)	30.9	61.0	8.1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15. 정부의 재정이 한정 혹은 부족되어 농업인 재해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데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1순위

	사례수	병원 치료비	병으로 인해입원 비용 보상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인생 장래에 대한 보상	장래비	기타	응답/ 답	계
전체	(1001)	54.9	25.0	13.7	2.7	.2	3.5	100.0
성별								
남성	(524)	56.7	21.9	15.5	2.9	.2	2.9	100.0
여성	(477)	53.0	28.3	11.7	2.5	.2	4.2	100.0
연령								
20대	(28)	50.0	25.0	21.4	3.6	.0	.0	100.0
30대	(62)	46.8	32.3	19.4	1.6	.0	.0	100.0
40대	(128)	50.0	31.3	15.6	1.6	.0	1.6	100.0
50대	(214)	57.5	23.4	15.0	1.9	.0	2.3	100.0
60대 이상	(569)	56.2	23.4	11.8	3.3	.4	4.9	100.0
지역								
전국	(117)	63.2	17.9	17.1	.9	.0	.9	100.0
경기도	(66)	47.0	33.3	16.7	1.5	.0	1.5	100.0
충청도	(73)	53.4	24.7	16.4	4.1	.0	1.4	100.0
전라도	(139)	57.6	20.1	11.5	5.8	.0	5.0	100.0
호남도	(104)	48.1	28.8	16.3	1.0	1.0	4.8	100.0
제주도	(166)	58.4	24.7	9.6	4.8	.6	1.8	100.0
서울	(173)	57.2	25.4	11.6	1.2	.0	4.6	100.0
인천	(133)	51.9	25.6	14.3	2.3	.0	6.0	100.0
대구	(30)	36.7	40.0	20.0	.0	.0	3.3	100.0
지역구분								
도시	(406)	56.4	22.9	15.3	1.7	.2	3.4	100.0
지방	(595)	53.9	26.4	12.6	3.4	.2	3.5	100.0
현황								
농업경영인	(143)	59.4	25.2	4.2	2.8	.0	8.4	100.0
농부	(336)	52.7	26.5	12.8	3.3	.6	4.2	100.0
농업경영인	(203)	54.7	25.1	14.8	2.0	.0	3.4	100.0
농부	(235)	59.1	21.7	16.6	2.6	.0	.0	100.0
농업경영인	(79)	45.6	29.1	22.8	2.5	.0	.0	100.0
농부	(5)	40.0	.0	20.0	.0	.0	40.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312)	54.8	24.0	10.6	4.5	.3	5.8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132)	62.9	23.5	11.4	1.5	.0	.8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51.5	24.7	16.0	3.6	.5	3.6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57.1	28.6	13.4	.9	.0	.0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61.3	24.7	12.9	1.1	.0	.0	100.0
200만원 이상	(113)	48.7	27.4	22.1	1.8	.0	.0	100.0
무응답	(45)	44.4	22.2	13.3	.0	.0	20.0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가입	(380)	55.0	24.7	17.4	1.8	.0	1.1	100.0
미가입	(621)	54.9	25.1	11.4	3.2	.3	5.0	100.0

문5. 정부의 재정이 한정 혹은 부족되어 농업인 재해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데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2순위

	사례수	병원 치료비	병으로 인해 무엇을 손실한 것에 대한 보상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기 장해에 대한 보상	장례비	기타	계
전체	(932)	20.4	37.6	33.0	7.7	1.3	100.0
성별							
남성	(491)	19.3	38.5	33.0	8.6	.6	100.0
여성	(441)	21.5	36.5	33.1	6.8	2.0	100.0
연령							
20대	(28)	25.0	35.7	32.1	7.1	.0	100.0
30대	(61)	16.4	32.8	36.1	13.1	1.6	100.0
40대	(125)	20.0	28.8	43.2	7.2	.8	100.0
50대	(208)	17.8	38.9	36.1	5.3	1.9	100.0
60대 이상	(510)	21.8	39.8	29.0	8.2	1.2	100.0
지역							
전국	(112)	23.2	41.1	26.8	8.9	.0	100.0
경기도	(61)	24.6	27.9	36.1	9.8	1.6	100.0
충청도	(68)	19.1	44.1	27.9	4.4	4.4	100.0
전라북도	(127)	17.3	35.4	36.2	8.7	2.4	100.0
전라남도	(99)	26.3	31.3	30.3	12.1	.0	100.0
경상북도	(157)	17.8	39.5	35.0	7.6	.0	100.0
경상남도	(157)	14.6	40.8	35.0	7.0	2.5	100.0
경쟁지역	(122)	23.8	37.7	32.8	4.9	.8	100.0
제주	(29)	27.6	31.0	37.9	3.4	.0	100.0
지역규모							
중도시	(380)	21.3	37.4	31.8	8.2	1.3	100.0
군지역	(552)	19.7	37.7	33.9	7.4	1.3	100.0
활력							
활력	(120)	20.8	42.5	25.0	10.0	1.7	100.0
중추	(308)	19.5	39.9	30.8	7.8	1.9	100.0
중추	(191)	26.2	36.1	32.5	4.7	.5	100.0
고대	(232)	15.1	31.9	42.7	9.1	1.3	100.0
대중 이상	(78)	24.4	39.7	28.2	7.7	.0	100.0
무응답	(3)	33.3	66.7	.0	.0	.0	100.0
소득							
30만원 미만	(271)	22.9	38.7	29.9	7.4	1.1	100.0
30만원~50만원 미만	(131)	18.3	39.7	31.3	9.9	.8	100.0
50만원~100만원 미만	(185)	21.6	34.6	35.1	6.5	2.2	100.0
100만원~150만원 미만	(109)	18.3	30.3	43.1	7.3	.9	100.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17.2	40.9	34.4	7.5	.0	100.0
200만원 이상	(112)	21.4	38.4	30.4	8.0	1.8	100.0
무응답	(31)	12.9	48.4	25.8	9.7	3.2	100.0
건강보험 가입의향							
의향 있음	(369)	21.4	36.9	35.5	5.1	1.1	100.0
의향 없음	(563)	19.7	38.0	31.4	9.4	1.4	100.0

농업인 재해보험 수용도 조사 · Raw Table

문5. 정부의 재정이 한정됨은 부족되어 농업인 재해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데 서비스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귀하께서 다음 중 어떤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 종합

	사례수	병원 치료비	병으로 인해 입원 비용 및 약 대 금 보 상 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 해 대 보 상	장례비	기타	기타 서비스 /단
전체	(1001)	73.9	59.9	44.5	9.9	1.4	3.5
성별							
남성	(524)	74.8	58.0	46.4	10.9	.8	2.9
여성	(477)	73.0	62.1	42.3	8.8	2.1	4.2
연령							
20대	(28)	75.0	60.7	53.6	10.7	.0	.0
30대	(62)	62.9	64.5	54.8	14.5	1.6	.0
40대	(128)	69.5	59.4	57.8	8.6	.8	1.6
50대	(214)	74.8	61.2	50.0	7.0	1.9	2.3
60대 이상	(569)	75.7	59.1	37.8	10.7	1.4	4.9
지역							
전국	(117)	85.5	57.3	42.7	9.4	.0	.9
경기도	(66)	69.7	59.1	50.0	10.6	1.5	1.5
충청남도	(73)	71.2	65.8	42.5	8.2	4.1	1.4
충청북도	(139)	73.4	52.5	44.6	13.7	2.2	5.0
전라북도	(104)	73.1	58.7	45.2	12.5	1.0	4.8
전라남도	(166)	75.3	62.0	42.8	12.0	.6	1.8
경상남도	(173)	70.5	62.4	43.4	7.5	2.3	4.6
경상북도	(133)	73.7	60.2	44.4	6.8	.8	6.0
제주도	(30)	63.3	70.0	56.7	3.3	.0	3.3
지역 규모							
광역시	(406)	76.4	57.9	45.1	9.4	1.5	3.4
지방	(595)	72.3	61.3	44.0	10.3	1.3	3.5
학력							
초·중·고	(143)	76.9	60.8	25.2	11.2	1.4	8.4
대졸	(336)	70.5	63.1	41.1	10.4	2.4	4.2
대학원	(203)	79.3	59.1	45.3	6.4	.5	3.4
대 이상	(235)	74.0	53.2	58.7	11.5	1.3	.0
무응답	(79)	69.6	68.4	50.6	10.1	.0	.0
기타	(5)	60.0	40.0	20.0	.0	.0	40.0
소득							
30만원 미만	(312)	74.7	57.7	36.5	10.9	1.3	5.8
30만원~50만원 미만	(132)	81.1	62.9	42.4	11.4	.8	.8
50만원~100만원 미만	(194)	72.2	57.7	49.5	9.8	2.6	3.6
100만원~150만원 미만	(112)	75.0	58.0	55.4	8.0	.9	.0
150만원~200만원 미만	(93)	78.5	65.6	47.3	8.6	.0	.0
200만원 이상	(113)	69.9	65.5	52.2	9.7	1.8	.0
무응답	(45)	53.3	55.6	31.1	6.7	2.2	20.0
건강보험 가입의향							
가입의향 있음	(380)	75.8	60.5	51.8	6.8	1.1	1.1
없음	(621)	72.8	59.6	39.9	11.8	1.6	5.0